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국가 순서별)

2020.10.29.(목) 10:00 외교부(재외국민안전과)

- ※ 아래 조치 현황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 제공 차원에서 참고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방문하시려는 국가지역 관할 우리 공관(대사관·총영사관·출장소·분관 등) 홈페이지, 해당 정부 공식 홈페이지 등을 사전에 필수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에 따라 4.13. 이후 관광 등 단기체류 목적으로 해당국 방문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향후 해당국이 입국금지를 해제하여 입국이 가능하더라도 협정이 재개될 때까지는 출국 전 해당국 사증(Visa)을 취득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해당국 리스트는 동 계시글 세 번째 첨부물에서 확인)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1	가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1부터 코토카 국제공항의 국제선 항공 운항 재개(8.30.)(단, 육로 및 해로 국경은 봉쇄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탑승 전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소지(미소지 시 △외국인의 경우 입국거부, △자국민의 경우 14일간 지정시설에서 의무 격리) ※ 입국 후 신속 진단키트 검사 실시(검사비용 자부담)하여 △음성인 경우 별도의 격리 없이 입국 가능, △양성인 경우 지정병원에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재국 외교단 및 국제기구 직원(동반 가족 포함)의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를 조건으로 신속 진단키트 검사 면제 가능
2	가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봉 거주자, 외교관의 경우 입국에 제한이 없으며, 항공기 탑승 5일 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확인서 소지(에티오피아 항공은 탑승 48시간 전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기도 함) ※ 경제적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관련 결정을 위해 사전에 유관당국에 통보 필요 ※ 한국, 중국, 미국, EU 대상 관광비자 발급 중단(3.13.) ※ 3.20.부터 육로·해로·항공 국경 봉쇄, 7.1.부터 항공을 통한 국경 재개방
3	가이아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선 운항중단(4.3.부터) ▶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7일 이내) 및 7일 자가 격리(△음성 결과를 대기 중인 입국자의 경우 14일 자가격리, △유증상 시 정부 지정 기관 격리)
4	감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31. 반줄 국제공항(BIA) 운영 재개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시, 도착 전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판정서 필요(10.10.)
5	과테말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18.부터 육해공 국경 개방 및 항공편 운항 재개(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 입국) △만 10세 이상 모든 입국자는 비행기 탑승 전 72시간 이내에 검사하고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또는 항원 음성확인서(반드시 영어 또는 스페인어 번역본) 제출 필요, △연령에 상관없이 사전신고사이트(https://sre.gt)에서 건강상태확인서(Health Pass) 온라인 작성 후 확인, △체온 검사, △유증상자의 경우 공항 검역관과 별도 인터뷰 및 검사 실시 ※ (육로 입국) 만 10세 이상 모든 입국자는 과테말라 도착 72시간 이내 검사한 코로나19 PCR 또는 항원 음성확인서 제출(단, 정기적으로 육로를 통해 입출국하는 여행객과 화물차 기사의 경우 예외), 국경에 비치된 건강상태 문진표 수기 작성
6	그레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비행기 탑승 전 7일 내에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전 그레나다 정부 홈페이지(http://covid19.gov.gd)상에서 건강증명서 양식 작성 및 제출 ※ 영국, 미국 등 고위험국가발 입국자의 경우 지정시설에서 4일간 격리
7	기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17.부터 항공편을 통한 출입국 허용, 항공기 탑승 전 5일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 검사 방식) 제출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였어도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별도 시설에 격리 ※ 출국 시 출국 3일 전 기니 국립공중보건연구소(INSP)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및 건강상태 신고서 제출
8	기니비사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시 출발 72시간 전 공인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상태, 출발지 및 도착지 연락처 등 제출 필요 ※ 발열 등 유증상자 대상 추가검사를 실시하며 및 결과 통보 및 보건당국 지시가 있을 때까지 거주지에서 격리 ※ 의심환자가 탑승한 항공편의 모든 승객은 14일간 보건당국이 별도 관리
9	나미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1.부터 빈트후크 공항의 국제선 운항 재개 ※ 관광 목적 외 비즈니스 목적의 외국인 입국도 허용하나 사전 비자 취득 필수 (도착비자 발급 불가) ※ 출국 72시간 이내에 발급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 (단기 방문객) 나미비아 내 목적지까지 자유로운 이동 가능(단,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시점이 72시간 이상 또는 발급 7일 이내일 경우 7일간 자가격리 또는 지정호텔에서 격리 필요) (장기 체류자) 거주 외국인의 경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없이 입국 가능하나 도착 후 진단 검사 또는 시설격리(양성 판정자)
10	나우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여행객은 호주(빅토리아주 제외), 뉴질랜드, 태평양 도서국(14개국)에서 체류 후 승인을 받아 나우루 입국 가능(7.24.) ※ △탑승 전 보건설문지 작성 및 체온 등 확인, △입국여행객 보건신고서 작성, △신체 건강 및 체온 확인, △필요 시 기타 검사 실시 ※ 모든 입국자는 지정 주거시설에서 격리, 격리 해제 전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11	나이지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전) △반드시 출발시간 기준 96시간 이내 검사 실시(72시간 이내 검사 권장) 후 코로나19 음성 판정 및 나이지리아 질병관리본부 사이트(http://nitp.nodc.gov.ng)에 결과 입력 필요(9.5) △상기 사이트상에서 현지 도착 후 7일째 되는 날 PCR 재검사를 위한 온라인 사전 예약 진행 및 자가진단서 작성 ▶ (입국 시) 출발 전 PCR 검사 결과서 및 재검 예약증 제출 ▶ (입국 후) △도착 후 7일간 자가 격리(보건당국 건강상태 모니터링 예정) 실시 후 예약한 장소에서 PCR 재검 실시 △재검 결과 음성 판정시 도착 후 8일째부터 격리 해제
12	남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에서 항공을 통한 입국 시 48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등 제출 필요(5.6.) ※ 상세 소지 필요 서류는 주우간다대한민국대사관에 문의 ※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필요 ※ 육로를 통한 입국은 금지(3.24-)
13	남아프리카공화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발시점 기준 72시간 이내의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10.1.) ※ 유증상자 및 접촉자의 경우 10일간 지정시설 격리(자부담) ※ △여행자 보험 가입 필수, △남아공 Covid Alert 앱 설치, △가족원 중 한명이라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족 전체 검사 및 격리(자부담)
14	네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 ※ 9.1.부터 외교관 및 국제기구 직원과 그 가족, 기타 네팔 정부가 주한네팔대사관을 통하여 특별히 허가하는 경우 국제선을 이용하여 입국 가능
15	노르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외국가 국민 대상 입국 금지(5.15.) ※ EU/EEA/셴겐 국가 중 고위험 국가(최근 14일간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20명 이상인 국가)를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을 10일간 자가 격리 조치(7.10.)
16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9.부터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9.) * 임시 비자 소지자(학생, 임시 노동자 등), 여행객 ※ (오클랜드 국제공항 경우) 6.19.부터 환승비자 또는 전자여행허가(NZeTA)를 발급받아야 하며, 최대 24시간 이내에 공항에서 경유하여야 함 - 다음 경유지에서 경유 허가(예: 승인(Confirmed) 상태의 환승비자 등)가 사전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뉴질랜드 경유도 불가 ※ 4.9.부터 뉴질랜드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시설 격리(4.9)
17	니우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1.부터 자국 거주민(12개월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거나 최근 12개월 이내에 6개월간 거주한 자)을 제외한 모든 외부인의 입국 불허 ※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반드시 14일간 격리 조치 ※ 니우에 정부의 허가를 받은 특정 전문직 종사자 등은 입국 가능
18	니제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시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유증상 시 신속항체검사 및 PCR 검사 실시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격리 권고(단, 출장 등 목적의 단기체류자의 경우 자기격리 불요하나 방역 조치 준수)
19	니카라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19.부터 국제선 정기 항공편 운항 재개(육로 국경을 통한 출입국 불가) ▶ 모든 입국자는 니카라과 입국 전 72시간 내 시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항공사에 사전 제출 및 입국 시 제출 필요(단, 아시아·아프리카·오세아니아 출발 입국자는 96시간 내 시행된 확인서 제출) ※ PCR 음성확인서에 반드시 'RT-PCR' 또는 'Real 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표기 필요 ※ 코로나19 유증상자 입국 불가
20	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 및 일반적 사회 방문 목적(친구 방문, 결혼식 참석, 문화활동 참석 등)의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6.24.) ※ 6.29.부터 해당국 주재 대만대표부에서 특별방문허가를 받는 경우 입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행기 탑승 3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증명서(영문본) 항공사에 제출 필요(단, 유효한 대만 거류증 또는 거류비자 소지자는 제출 면제) - 항공사 체크인 및 탑승 이전에 '입경 검역시스템(https://hdhq.mohw.gov.tw/)'에 접속하여 신고 완료 필요 - 입국 후 14일간 자기격리(단기 방문 기업인 격리기간 단축 가능 14일→7일) ※ 6.25.부터 대만 타오위안 공항에서 중화항공, 에바항공, 케세이퍼시픽항공 계열사 항공기를 통한 환승 허용(6.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만 도착 후 8시간 이내의 환승에 한해 가능 - 단, 중국에서 출발하거나 중국에 도착하는 경우의 환승은 불가 ※ 외국인 유학생(졸업예정자, 재학생, 신규학위 과정 입학생) 입국 가능 (출국지에서 항공기 탑승 전) 학교에서 발급한 통지서와 허가증명서를 항공사에 제시하고 입경검역시스템에 입경 신고 완료 (대만 입경 후) 교육부와 각 대학교가 함께 운영하는 공항 데스크에서 입경신고 →공항 상주 대학교 담당자의 안내로 방역차량 탑승 →방역호텔 또는 대학교 지정 기숙사에서 14일간 자기격리 실시
21	덴마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을 포함한 안전국가(지난 2주간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20명 이하인 국가) 거주민에 대한 국경통제 완화 ※ 입국 시 안전국가에 체류중이었다는 사실 입증 필요(출입국사실증명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은 불요하나, 증상이 있는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 ※ 10.26.부터 EU+ 내 고위험국가*를 구분하여 해당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 제한 및 출국 전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요구(1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국가(21개국) : 벨기에, 불가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룩셈부르크, 몰타,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위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영국,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22	도미니카공화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자에 대해 랜덤방식으로 코로나 신속 검사 후, 검사 결과 코로나19 양성이거나 유증상시 지정시설 격리 ▶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23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역외국가 국민 원칙적 입국 금지(6.15.) ※ 7.2.부터 EU+ 역외국가 전체 대상 입국 금지 예외 사유를 확대하였으며, 아래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입국 가능(주한독일대사관 공지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국적자, EU시민, 독일 내 장기체류 자격을 보유한 제3국적자, △보건인력, 보건 연구원, 요양원 인력, △독일 입국이 필수적인 해외전문인력 및 유능한 피고용인, △운송인력, △농업 분야 계절노동자, △선원, △외국에서 학위를 마칠 수 없는 학생, △동반가족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및 시급한 가정사로 방문하는 자, △국제적 보호 또는 인도적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자, △외교관, 국제기구 인력, 군인, 인도주의 조력자, △중전 후 독일로 돌아온 이주민, △독일 경유자, △유학생 중 물리적으로 독일에서 출석의무가 있음을 증빙하는 대학 측 확인서를 지닌 신입생 및 교환학생, △박람회 방문을 위한 출장용 입국(관련 서류 필요), △기숙학교 입학자(최소 6개월 이상 거주), △출장자 단기방문(관련 서류 필요) ※ 단, 사안별로 예외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다소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입국 추진 단계에서 주한독일대사관 및 독일 연방 경찰 등을 통해 미리 확인 필요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1.부로 위험지역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기격리 제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자의 14일간 자기격리 의무에 대한 관리 강화(입국 1일 이내 건강상태 신고서 관할 보건소 전달 등)
24	동티모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9.) ※ 특별한 경우 총리 허가 시 입국 가능하나, 지정시설에서 14일 격리(5.30.) ▶ 4.4.부터 향후 안내 시까지 국제선 민간 상업기 운항 중단(4.3) ※ 긴급항공편 및 필수 항공편은 예외
25	라오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31.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10.1) ※ 긴급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입국을 원하는 경우 입국 전 라오스 코로나19 대책 위원회의 사전허가 필수 및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검사 결과서(RT-PCR만 인정) 지참 필요 - 입국 직후 진단검사 실시 및 지정 시설에서 14일간 격리 ※ 유효한 비자 소지자의 경우 입국허가 절차를 통해 입국가능(상세내용 주라오스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26	라이베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입국자는 출발지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6.27.) ※ 미소지자는 도착 직후 간이 테스트 실시하여 △양성일 경우 PCR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시설 격리, △음성일 경우 PCR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자가 격리 ※ 체온 측정 및 앱을 통한 전화번호 등록
27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7.부터 한국(인천)과 정기항공편 운항을 재개하여 한-러간 직항 항공편에 대해 우리 국민의 러시아 입국 허용(제3국 경유 입국 및 육로 입국은 불허용) ※ 입국 시 러시아 도착일 기준 72시간 전에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영문 또는 노어) 제출 필요 ※ 학생비자 및 노동·상용비자(HQS 포함) 소지자의 경우 14일 격리 ※ 경우에 따라 검역당국으로부터 격리 명령 발부 가능성 있음 ▶ 3.30.부터 모든 러시아연방 국경에서 차량, 철도, 도보, 하천 등 이동제한 ※ △영주권자, △외교공관,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 대표부, △러시아 내 기타 외국 공식 대표부 등의 소속직원, 국제운송 차량의 운전자, 하천 선박 승무원 등은 예외
28	레바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1.부로 국제공항 운영 재개 및 입국제한 완화 ※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항공편 탑승 96시간 내 출발국가의 당국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실시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항공편 탑승 시 체크인 카운터에 제출(미제출 시 탑승불가, 12세 미만은 검사 의무 면제) ※ 모든 입국자는 사전에 https://arcg.is/0GaDnG에서 건강확인서 출력 및 작성 필요 ※ 입국 후 72시간 내 PCR 검사 추가 수행하거나 자가 또는 호텔에 10일 격리 ※ 이라크·시리아·터키·모든 아프리카 국가에서 입국하는 승객은 입국 후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12세 이하 승객, UNIFIL 및 레바논 주재 외교관은 검사 의무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리아·터키·아프리카 국가) 입국 후 48시간 동안 자가 격리,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시 격리 해제 - (이라크) 입국 후 72시간 동안 지정 호텔에서 자가 격리, 코로나19 PCR 검사 재실시(단, 레바논 국적자 또는 거주 외국인의 경우 지정 호텔 외 시설에서 격리 가능하며, 그 외 입국자는 지정 호텔을 예약하지 않을 경우 레바논행 항공편 탑승 불가) ※ 예외 : △1주일 내 기간으로 여행 후 레바논에 재입국하는 승객의 경우 출발 시의 검사 의무 면제, △입국 후 48시간 이내 출국하는 승무원의 경우 검사 의무 면제(단, 레바논 체류 기간 동안 지정 호텔에서 격리)
29	르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부터 국제공항 운항 재개(7.29.) ※ 르완다 입국 및 경유하는 모든 여행객은 △항공기 탑승전 120시간 내 코로나19 검사(PCR) 음성확인서 소지, △도착 120시간 전 www.rbc.gov.rw에 접속하여 입국 관련 정보(성명, 여권번호, 항공편 등) 기입 및 음성확인서 업로드(입국자의 경우 예약한 호텔명 입력) ※ 르완다 입국 및 경유하는 모든 여행객 대상 키갈리 소재 17개 지정 호텔에서 코로나19 검사 실시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24시간 격리(르완다에서 지정된 호텔에 사전 예약, 비용 자부담)
30	리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시점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31	리투아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차원의 국경통제 해제 권고 역외국가(한국 포함)를 대상으로 입국 제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최근 14일간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25명 초과 발생 시 입국 불가하며 경유지 체류(환승 목적 입국 포함) 후의 입국은 불허될 수 있음 ※ 모든 입국수단(항공, 차량 등) 탑승 전 홈페이지(keleiviams.nvsc.lt/en/form)에 게재된 양식을 작성하고, 확인 QR코드를 받아 탑승 시 제시
32	마다가스카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20.부터 국경봉쇄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3.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1.부로 노시베 국제공항 운영 재개(출국 목적의 유효한 왕복 항공권 소지 관 광객에 한정, 타지역 이동 불가)
33	마셜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제 여행객의 입국 금지 10.5까지 연장(9.4.) ▶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6.5.)
34	마이크로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자국민을 제외한 외국인 입국금지(5.4.)
35	마카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8.부터 외국인 입국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국민, 영주권자의 경우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및 입국 후 14일간 지정 시설 격리(8.7.) ※ 외교관, 정부대표단의 경우 입국 후 14일간 격리
36	말라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1.부터 제한적으로 국제선 항공노선 운항 재개 발표(8.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시 입국일로부터 10일 이내(가능하면 72시간 이내 권장) 발급된 코로나19 음성결과서 지참 필요(미지참 시 입국 거부), △입국 후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유증상 시 진단검사 실시(비용 자부담) ※ 단수비자(도착비자) 발급 재개
37	말레이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8.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별도 공지시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외적 입국 허용 대상자(관련 상세 내용은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이민국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입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8. 이후 출국한 △영주권 소지자, △말레이시아 국적자의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 - MM2H 프로그램 참가 외국인 중 문화관광예술부의 별도 승인을 받은 자 - 외교관 - (외국인 근로자 등 관련) 취업비자-Caterogy 1-2-3 소지자 및 그들의 부양가족과 외국인 가사보조인, △전문가 방문 비자(Professional Visit Pass) 소지자, △취업비자 및 거주비자-Talent 소지자의 Long Term Social Visit Pass(18세 이상 자녀, 부모 등) 소지자(이민국 ESD 부서의 사전 입국 승인 필요), 치료목적 의료 관광객(한국 포함 6개국)은 관계기관 및 이민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입국(출국 후 재입국)가능 - (외국인 학생) 10.8일부터 12.31까지 외국인 학생비자(대학생) 소지자 한시적 입국 금지(10.4) 나. 말레이시아 출국 및 재입국을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출국 전에 이민국(DGIM)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출국 및 재입국(재입국은 승인 서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 가능(공무사업-긴급한 사유치료 목적) ※ 7.24.부터 모든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 실시 및 정부 지정 시설에서 14일간 격리(자부담)(관련 상세 내용은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38	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25.부터 항공편을 이용한 출입국 및 경유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요건) △건강상태신고서 작성, △ 출발지 보건당국으로부터 출발 전 3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검사 방식) 제출,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격리 후 검사 진행 / 음성확인서 미소지 시 공항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혹은 호텔격리(비용 자부담) ※ (출국 요건) △공항 및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 △출발 전 3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검사 방식) 제출, △체온 38도 이하 및 코로나19 무증상자만 항공기 탑승 가능 ※ (경유 요건) △출발지 보건당국으로부터 출발 전 7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검사 방식) 제출,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사용, △발열 체크, △숙박 경유 시 자가격리 및 코로나19 위생수칙 준수
39	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시 발열체크 및 문진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증상 시 진단검사 실시하고, △경증시 자가격리, △중증시 입원조치 ▶ 11.21.까지 멕시코-미국 육로 국경 간 비필수적 이동 제한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40	모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1.부터 한국 포함 사증면제국가 대상 입국제한 추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입국 시 필수요건이었던 항체검사 폐지(10.1.) ※ △우리 기업인/기술자의 경우 ①모로코 기업의 초청장, ②모로코 입국시점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우리 일반 방문객의 경우 ①모로코 내 호텔 예약 확인증, ②모로코 입국시점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1세 미만 어린이는 코로나19 PCR 검사 면제 ※ 관련 상세 사항은 주한 모로코 대사관을 통해 확인 가능
41	모리셔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1.부터 자국민, 영주권자, 체류허가증 소지 외국인, 장기 여행자 등 대상으로 제한적 국경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입국자는 입국 즉시 지정호텔에서 14일간 격리, 격리 7일차·14일차에 PCR 검사 실시 - 장기 여행자의 경우 탑승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출국 목적의 유효한 왕복 항공권, 14일 의무격리를 위해 지정된 호텔의 숙박이 포함된 여행 패키지 구매 증빙서류 소지 필요
42	모리타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10.부터 국제선 운항 재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입국 요건(비자 발급 등)에 더해 입국 시 △모리타니아 내 체류장소 확인서(제공 양식 사용) 제출, △모리타니아 내 보건지침 준수, △입국 시 체온측정 협조, △입국 전 3일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시(필요 시 도착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실시 협조) 필요(9.9.) ※ 유증상자의 경우 공항 보건팀 조치에 따라 협조 ※ 경유승객도 상기와 동일한 지침 적용
43	모잠비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자) △입국 비자 발급 중지 및 기 발급된 입국 비자 취소(단 기술 이전, 봉사 활동, 프로젝트, 인도주의 등의 경우 모잠비크 정부 승인 시 비자 발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외국인 기술자들 대상 체류기간 기산 잠정 정지 ▶ (검역) △모든 입국자는 출발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입국 시 10일간 자가격리, △자가격리 종료 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자비 부담, 제출 불가 시 자가격리 4일 연장)
44	몰도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31.부터 최근 14일 이내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50명 미만 국가(한국 포함)로부터 오는 외국인 입국 허용(단, 유증상 시 14일 자가격리 시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50명 이상인 레드 리스트 67개국에서의 입국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드 리스트(10.26.) : https://mfa.gov.md/ro/content/alerte-de-calatorie-covid-19 - 예외(입국허용) : 몰도바 국민의 부모/자녀/배우자, 몰도바 장기비자/거주허가/근로허가 소지자, 유학생, 교사, 단순 경유자, 몰도바 기업초청장/근로계약을 소지한 몰도바내 근로예정자, 외교공관 직원 및 그 가족, 정부대표단, 선박/항공/철도 승무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들은 몰도바에서 코로나 진단 및 치료시 가입의료보험 또는 자비 부담으로 진행
45	몰디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15.부터 일반 관광객의 입국 허용 및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도착비자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전 사전에 등록된 숙박시설 예약 필수(체류 기간 중 동일 시설에서 머물러야 함), △공항에서 발열체크, △입국 시 72시간 전 시행한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유증상인 경우 PCR검사(일행 중 한명이라도 증상을 보이면 일행 전원 PCR 검사), △입국자 대상 무작위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취업비자 소지자의 경우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46	몽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31.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및 경유(환승) 금지(9.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외적 입국 허용 대상)△외교단·국제기구 직원 및 가족, △몽골인의 직계 가족인 외국인, △운송 분야 종사자, △외교(D)·관용(A) 및 상용(B) 목적으로 몽골에 입국하는 외국인 ※ 모든 입국자 대상 총 21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시설격리 기간 중 총 3회 PCR 검사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지참 필요 ▶ 10.31.까지 국제선 항공편 운항 중단(9.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임시항공편 부정기 운항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47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이판) (입국자 전원) 코로나19 음성확인서(북마리아나 보건부가 인정하는 PCR검사 결과)를 반드시 제출, 미제출 시 5일간 정부시설에서 의무격리(비거주자의 경우 1박당 \$400 자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음성확인서는 여행자 성명, 검사수행기관명, 검체수집일(입국 3-6일 이내), PCR 검사 실시 여부, 검사 결과 필수 포함 ※ 최소 입국 3일전 북마리아나 코로나19 대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의무신고서 (Mandatory Declaration Form)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www.governor.gov.mp/covid-19/travel ※ 입국 후 14일 간 북마리아나 보건부 증상 모니터링 시스템에 코로나19 증상 여부 등 신고 ※ 입국 5일 후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당일에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500 벌금 부과 및 정부 지정 격리시설로 이송) ※ (거주자) 상기 절차 후 자가격리 및 입국 5일차에 지정된 장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하여 음성 시 자가격리 종료 ※ (비거주자) 상기 절차 후 예약호텔에서 격리 및 입국 5일차에 지정된 장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하여 음성 시 격리 종료 ※ (기타) 필수인력으로 분류된 경우 입국 당일 코로나19 진단 검사 실시 가능(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약호텔 등에서 격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인력 인정 대상은 미국 국토부 웹사이트(www.cisa.gov/critical-infrastructure-sectors)에서 분야별로 확인 가능하며, 보건부 직원과 이메일(cnmihealthofficial@chcc.gov.mp)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괌) 출발지역, 체류기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등과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는 정부 지정 시설에서 14일간 격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6. 정오 이후 입국자는 5일간 정부 지정 격리시설에서 격리하고, 6일차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 자가격리 전환 가능 ▶(하와이) 11.30.까지 방문자에 대한 14일간 의무격리 조치 연장(1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10.15.부터 출발 기준 72시간 전 지정된 기관(미국 국내 항공사 및 대형 약국 등)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시 의무격리 면제가 가능한 방문자 격리면제 프로그램(Pre-Travel Test Program) 시행 - 방문자가 오아후섬 도착 후 마우이섬, 카우아이섬, 하와이섬 여행시에는 해당 섬 도착 후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고, 음성일 경우에 계속하여 격리 면제 ▶(푸에르토리코) 모든 내외국민 대상 도착 시 여행신고서와 항공기 도착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결과확인서, 공항 출구 확인 번호와 QR코드 제출 의무(푸에르토리코 보건부의 포털사이트에 결과서 업로드 시 확인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증상자의 경우 공항에서 손가락에서 채취한 혈액으로 신속 코로나19 검사 실시, 결과와 무관하게 격리(비용 자부담) ▶(미국령 사모아) 입국한 모든 방문자는 △미국령 사모아를 입국하기 전 하와이에서 14일 체류, △건강검진서 제출, △입국 시 추가적으로 보건 검진을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방문자를 14일간 격리조치(3.24.) ▶(하와이주) 11.30.까지 방문자에 대한 14일간 의무격리 조치 연장(1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10.15.부터 출발 기준 72시간 전 지정된 기관(미국 국내 항공사 및 대형 약국 등)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시 의무격리 면제가 가능한 방문자 격리면제 프로그램(Pre-Travel Test Program) 시행 - 방문자가 오아후섬 도착 후 마우이섬, 카우아이섬, 하와이섬 여행시에는 해당 섬 도착 후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고, 음성일 경우에 계속하여 격리 면제 ▶(뉴욕주) 美CDC가 2-3단계 국가(한국 포함)로 지정한 국가에서 뉴욕주를 방문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여행자 정보(traveler health form) 작성 및 14일간의 자가격리 의무 부과(위반 시 민사처벌 가능) ▶(로드아일랜드주) Travel Screening Form, Certificate of Compliance 작성 및 14일 의무 자가격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착 전 72시간 내 검사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시행하여 음성 결과 시, △미국 내 일부 주에서 방문 시 자가격리 면제 ▶(매사추세츠주) 사전 Travel Form 작성 후 14일 의무 자가격리(위반 시 벌금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착 전 72시간 내 검사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시행하여 음성 결과 시, △미국 내 일부 주에서 방문 시 자가격리 면제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메인주) 방문객 대상 14일 의무 자가격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착 전 72시간 내 검사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시행하여 음성 결과 시, △미국 내 일부 주에서 방문 시 자가격리 면제 ▶(버몬트주) 방문객 대상 14일 의무 자가격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일 의무 자가격리 후 코로나19 검사 시행하여 음성확인 시, △미국 내 일부 주 및 카운티에서 방문 시 자가격리 면제 ▶(알래스카주)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미소지 입국시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비용 \$250) 실시 및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본인 비용으로 자가격리 실시(음성확인서 제출 시 격리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래스카주 도착 전 포털을 통해 여행자신고서 및 자가격리 계획서 제출 필요 (입국 후 5-14일 사이에 지정 검사소에서 코로나19 재검사(선택사항)) ▶(코네티컷주) 美CDC가 3단계로 분류한 국가(한국 포함)의 여행자에 대해 여행자 정보 작성 및 14일 자가격리 의무 부과(위반 시 민사처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도착 전 72시간 내 검사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시 면제
48	미얀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25.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비행기 탑승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행) 제출 의무 부과(3.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얀마와 인접 국가*간 육로를 통한 외국인 입국 금지(3.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태국, 인도, 라오스, 방글라데시 ▶ 모든 외국인 대상 시설·자가 격리 기간 28일(21일 시설 격리 후 7일 자가 격리)로 확대 시행(4.11.) ▶ 외교관, 유엔관계자, 선박과 항공기 승무원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비자발급 중단 및 ASEAN회원국 포함 모든 외국인에게 상호협정에 따라 부여된 비자 면제 중단(3.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관과 유엔관계자는 해당국 소재 미얀마 공관에서 입국 비자 신청, 코로나 19 음성 확인서(탑승전 72시간 이내 발행) 제출 의무 및 도착 후 14일간 자가격리 ※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은 해당국 소재 미얀마 공관에서 입국 비자 신청, 교통통신 부 가장 최근 지침 및 지시 준수 ▶ 긴급한 공무 또는 타당한 사유로 미얀마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하기 사항 충족 시 예외적으로 입국 허용 및 격리 완화(6.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얀마 입국 최소 72시간 전 실시한 코로나19 진단 음성판정서 제출 - 입국 전 자국에서 7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였다는 사실 증명 - 주한미얀마대사관을 방문하여 비자를 신청하고, 주미얀마대한민국대사관이 예외적 입국 희망자 리스트 및 사유를 공한으로 송부 - 입국 후 7일간 시설 또는 호텔 격리를 실시한 후 코로나19 PCR 검사에서 음성판정이 나올 경우 추가 자가격리 7일 후 활동 가능 ▶ 10.31.까지 국제선 여객기 착륙 금지(9.24.)
49	민주콩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5.부터 국경봉쇄조치 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출국시 72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지참 및 모든 승객에 대해 비접촉 체온계로 발열 측정, 검역문진표 작성
50	바누아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어 바누아투 국제선 운항 중단(7.14.)
51	바레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4.부터 도착 비자 발급 재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다음 해당자 외에는 입국제한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레인 국민, 거주허가증 소지자, 한국 등 도착 비자 발급 대상국 승객, 유효한 eVisa 소지자, 외교관, 군인, 승무원, 공무원, 및 UN관계자(상세 사항 www.evisa.gov.bh) ※ 모든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실시(음성 결과 판별 시까지 자가격리 실시 및 입국 후 10일째 코로나19 재검사)
52	바베이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비행기 탑승 전 72시간 내에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9.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전 바베이도스 정부 홈페이지(www.travelform.gov.bb)에서 입국카드(ED)를 작성하여 코로나19 음성확인서와 함께 이메일(immigration.embarkation@barbados.gov.bb) 제출
53	바하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일 이내의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도착 시 발열 검사 및 14일 격리(투숙호텔) ▶ 11.1.부터 탑승 전 7일 이내의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도착 후 96시간 이내 신속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검사 실시 예정(10세 이하 신속 검사 면제)
54	방글라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에서 입국한 승객은 주재국 내 체류지 및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고,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 필요(입국 시 공항에서 검역직원이 시설격리 또는 자가격리 여부 결정)(3.23.) ※ 한국인 포함 모든 외국인에 대해 도착비자 발급 중단(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에서 사전에 비자 취득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자 신청 및 방글라데시 입국 시 출발 전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영문) 제출 의무(단, 10세 미만 아동은 제출 면제)(3.23.) ※ 3.23.부터 인도와의 접경 지역에 위치한 11개 출입국관리소를 통한 외국인 입국 무기한 금지(3.23.)
55	베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입국자 대상 의무 코로나19 PCR 검사, △ 입국 즉시 1차 검사(입국시 여권은 베냉 당국에서 보관하며, 양성 판정시 코로나19 완치 이후 여권 회수가능), △ 입국 14일 이후 2차 검사, △ 출국 72시간 전 3차 검사 ※ 환승·경유 승객 코로나19 검사 면제
56	베네수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시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3.18.) ※ 베네수엘라 출입국 모든 외국인은 72시간 전 베네수엘라 주재 자국 대사관을 통해 베네수엘라 외교부에 통지 필요(3.18.) ※ 모든 입국자 대상 의무 샘플 검사(PCR) 실시(△코로나19 음성 판정 시 15일 자발적 자가격리, △양성 판정 시 의무 격리)(4.5.) ▶ 11.12.까지 항공편 운항 중단 연장
57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22.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21.) ※ 외교 또는 공무 목적 및 특수한 경우(중요 대외활동 참석, 전문가, 기업 관리자 및 고급 기술인력) 제외(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베트남 측과 충분히 협의된 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외적으로 입국 가능한 경우, △입국 후 보건 당국에 통보/등록,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베트남 입국 3-7일 전 실시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시, △국제의료보험 가입 필수, △초청 기관에서 치료비 부담(8.3.) ※ 모든 입국자는 격리시설에서 14일간 격리(격리시설 이동 후 진단검사 실시)
58	벨라루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15.부터 벨라루스 입국 기준 72시간 이내에 검사하여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영어 또는 러시아어, 성명 기재 필수) 지참 의무(단, 벨라루스를 24시간 이내 경유하는 경우에는 예외, 항공권 소지 필요) ※ 한국 포함 38개국에서 출발 시 자가격리 미실시(관련 상세 내용은 주벨라루스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38개국 이외의 국가에서 출발하여 입국하는 경우 입국 후 10일간 자가격리 실시(격리기간 중 원격모니터링 시행)(10.21.) ※ 중간 경유지에서 24시간 이내 체류한 경우에는 최초 출발국에서 출발한 것으로 간주, 24시간 초과한 경우에는 경유지 국가에서 출발한 것으로 처리
59	벨리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1.부터 항공 운항 재개 ※ 모든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입국 후 자발적 격리 권고(15일)
60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9.12.부터 48시간 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를 소지하는 경우 입국 허용
61	보츠와나	▶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고위험국가 출발 외국인 입국 금지(3.28)
62	볼리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1부터 항공편 이용 입국 가능(육로 및 해로 국경은 봉쇄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류국 내 볼리비아 대사관·영사관에서 입국허가 신청, △볼리비아 도착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볼리비아 대사관·영사관 인증 필) 제출 ※ 육로 및 해로 국경은 △볼리비아 국민, △거주자격 소지 외국인,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다양한 분야의 기술자 및 전문가 등만 예외적으로 입국 가능하며, 일반 외국인 입국 불가
63	부룬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7.부터 모든 여행객 대상 도착 72시간 전 내의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판정서 제출 필요 ※ 입국 후 지정 호텔에서 7일 격리 및 코로나19 검사 실시
64	부르키나파소	▶ 항공을 통한 입국 재개(7.28.)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시 5일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 지참자의 경우 일상활동 가능하며, 입국일로부터 8일째, 14일째 날에 지정 검사소에서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 △코로나19 유증상자(체온 38도 이상) 또는 음성확인서 미소지자의 경우 입국장에서 코로나19 신속항체검사 및 PCR 검사 실시(비용 자부담) ※ 음성확인서 미소지 승객의 경우 PCR 검사 시행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부 지정 시설 격리
65	부탄	▶ 모든 여행객 대상 입국금지(3.6.)
66	브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29.부터 비자 소지 등 적법한 입국 요건을 갖추면 항공을 통한 외국인 입국 허용 ▶ 우리 국민의 단기 방문 무사증 입국 허용 유지 ▶ 육상 및 해상(또는 수상)을 통한 입국제한 재연장 및 일부 육로 입국 허용(10.14부터 30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경국가에 거주하고 본국 귀국을 위한 항공기 탑승 외국인은 연방경찰의 허가 받는 경우 입국 가능. 사전에 항공권 지참, 대사관 혹은 총영사관 공식 요청 및 입국 후에는 해당 공항으로 바로 이동 - 파라과이 접경 도시 일부(포즈 두 이과수, 폰타 포라, 문두 노부)에 대해 적법한 입국 요건을 갖춘 외국인의 입국 허용 ※ 수, 해로: 의료지원의 경우/항공을 통한 본국 귀국 환승의 경우 입국 허용
67	브루나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외국인 입국 및 환승금지(3.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비즈니스 여행(공무 여행 포함), △학업, △치료, △브루나이 국민·거주자의 부모, 배우자, 가까운 가족 등 배려 상황 및 기타 특별한 상황 등에 대해 입국 승인(9.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인 신청은 브루나이 내 초청자가 Travel Portal 웹사이트에서 여행 8일전 Entry Travel Pass신청 - 여행자는 △브루나이로 출발 전 최소 14일 동안 출발국가에 체류,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브루나이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실시 및 2-14일*간 의무 자가격리, △브루나이 체류 최초 14일동안 BruHealth 앱을 통해 건강상태 일일보고 등 의무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리기간은 입국 시 브루나이 정부의 자체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상이 ※ 육로로 브루나이에 입국하려는 모든 외국인(브루나이 경유 운전자, 운송업자 등) 대상 입국 시 육상 국경통제소에 코로나19 음성확인서(검사결과는 검사 일로부터 7일간 유효)제출 의무(10.1) ▶ 브루나이-싱가포르 상호 그린레인 실시(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적불문, 브루나이와 싱가포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비즈니스 및 공무 목적의 필수 여행이 필요한 자는 사전 승인 신청을 통해 상호 방문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발 전 14일동안 출발국가 체류, △출발 72시간 전 실시한 코로나19 진단 검사 음성 결과 제시, △시간대별 여행일정 제출, △BruHealth 앱 설치, △도착 후 진단검사 실시 및 결과 대기 동안 격리 등 보건조치 필요
68	사모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모아 내각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 모든 국제항공편 중단
69	사우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후 공지 시까지 외국인 입국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유효한 Exit and Re-entry비자, 취업비자 및 방문비자 소지자는 예외(9.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 관련 내용 주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70	상투메프린시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16.부터 코로나19 대응 3단계 완화 조치 시행하여 상업 항공 운항 재개 허가 및 상투메프린시페 내 섬 지역간 이동(항공 및 선박)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및 제시, 음성인 경우 별도 격리 불요
71	세네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15.부터 항공편을 이용한 입국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 탑승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입국 승객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항공기 탑승 가능(입국 5일 이내 출발국 내 정부 인증기관 혹은 국제 인증 보건기관에서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 ※ (공항 입국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승객은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없는 경우 별도 검사 없이 입국(24시간 내 경유 및 환승 구역 내 체류 조건 충족 필요)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 공항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위험 평가(증상 여부, 출발지, 경유자, 경유지 체류 시간 등)를 한 후 검사 여부 결정
72	세이셸	▶ 32개국* 대상 입국 허용(10.1.) * 오스트리아, 호주, 캄보디아, 캐나다, 중국, 사이프러스, 덴마크, 이집트,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모나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키스탄, 포르투갈, 카타르, 싱가포르, 한국,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태국, 베트남
73	세인트루시아	▶ 7.9.부터 세인트루시아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입국일 7일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음성확인진단서를 제출 ※ 세인트루시아 도착 전 정부 홈페이지(www.stlucia.org)상에 있는 여행등록서에 코로나19 음성판정임을 증명하고, 체류할 호텔명 제출 ※ 모든 입국자 대상 공항에서 검역절차를 진행하며, 증상이 있을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호텔 또는 정부시설에서 격리 ※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여행자의 경우 입국 시 진단검사를 받지 아니하며, 입국수속 후 코로나19 지정 호텔 등에서 체류 - 미소지 입국자는 즉시 격리되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됨(자비 부담)
74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비행기 탑승 전 5일 내에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10.1.) ※ 입국 시 공항에서 코로나19 재검사 실시 및 24시간 격리 조치 실시 ※ 입국 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정부 홈페이지(https://stv.servicedx.com/travelform)상에서 입국 서류와 코로나19 질문서 작성, 코로나19 음성확인서와 함께 제출 필요 (coronavirustaskforcesvg@gov.vc)
75	세인트키츠네비스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홍콩, 싱가포르, 일본,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 또는 지정시설 격리 - 입국자 대상 방문 전 6주간의 방문한 국가, 장소 등을 입국카드에 기재할 것을 요청
76	솔로몬제도	▶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1.) ※ 2021.1.10.까지 솔로몬 항공 국제선 운항 중단(10.1.)
77	수단	▶ 모든 국제선 운항 재개(국가보건비상사태는 유지) ※ 국적과 상관없이 6세이상의 모든 입국자는 수단 입국일 기준 96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공인된 코로나19 PCR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하며, 입국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는 경우 격리에서 면제
78	수리남	▶ 10.12.부터 10.26.까지 자국민 및 영주권자 제외 모든 여행객 대상 입국금지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입국 조치 비정기적으로 변동
79	스리랑카	▶ 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입국 금지(3.22.) ※ 공항 안에서 머무르는 조건으로 12시간 내의 환승 허용 ※ 체류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이 소지한 모든 비자의 효력 중단, 신규 비자발급 중지 ※ 외국인의 경우 필수 비즈니스 목적 등 입국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 가능(단,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스리랑카 측과 충분히 협의된 자에 한함) - 스리랑카 관계 기관을 통해 예외적 입국허가 신청발급 및 이민국에 비자 신청 필요 - △입국 전후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 △입국 후 지정호텔에서 2주간 격리, △격리 해제 전 PCR 검사 재실시, △이후 2주 자가격리
80	스웨덴	▶ EU+ 역외국가 중 한국, 호주, 조지아,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르완다,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를 입국제한 대상 국가에서 제외 ※ 상기 입국제한 예외 적용 여부는 국적이 아닌 '체류 국가'에 따라 적용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문서 제출 의무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등의 증빙자료와 스웨덴 도착 시 한국에서 출발하였다는 항공권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영문 또는 스웨덴어로 번역된 자료 구비를 추천) ※ 단, 그 외 EU+ 역외국가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는 10.31.까지 연장
81	스페인	▶ 7.4.부터 한국 포함 10개 EU+ 역외국가* 대상 입국 제한 완화(7.3.)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호주, 캐나다, 조지아, 일본, 뉴질랜드, 르완다,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 ※ 상기 국가 거주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스페인 입국 가능하며, 한국인은 단기방문시 무사증 입국(최대 90일)이 가능하나 입국시 3단계 특별 검역절차를 거쳐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여행 48시간 전까지 온라인 특별검역신고서 작성, 도착 시 QR 코드 제시(스페인 보건부의 Spain Travel Health 사이트 또는 모바일앱 SpTH에서 작성), ② 발열 체크, ③ 대면 심사
82	시에라리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국 전) 출발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 실시 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출발지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여행허가서류(Traveler's Authorization)*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시에라리온 여행포털(www.travel.gov.sl)에 게시된 Passenger Locator Form, △도착 시 코로나19 검사비용 납부증(상기 사이트를 통해 납부)(7.17.) ▶(입국 후) 코로나19 간이검사 및 PCR 검사 실시, 검사비용 납부증 및 Passenger Locator Form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이검사가 △음성일 경우 목적지 이동 허용 및 PCR검사 결과 확인시까지 자가 대기, △양성일 경우 공항 인근 격리호텔에서 PCR검사 결과 확인시까지 격리
83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24.부터 단기 방문객의 싱가포르 입국경유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최근 14일 브루나이·뉴질랜드·베트남·호주(빅토리아주 제외)에 지속 체류한 경우 단기 방문 허용(입국 전 사전 신청 필수, 상세 절차 관련 주싱가포르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일부 도시에서 출발하는 일부 항공편의 경우 제한적으로 경유 허용(각 항공사에 문의 필요) ※ 3.30.부터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는 싱가포르 입국 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을 받은 개인은 공항 체크인 및 싱가포르 도착 후 심사 과정에서 사전 승인서(2주간 유효) 제출 의무(3.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인서 미소지시 싱가포르 도착 48시간 내 싱가포르를 떠나야 하며(비용 자부담), 불이행시 장기체류비자 취소 ※ 8.29.부터 싱가포르 국적자·영주권자는 △14일간 정부 지정 시설 격리(비용 정부부담), △격리 기간 중 코로나19 검사 시행(비용 자부담) ※ 8.29.부터 장기체류비자소지자는 △14일간 정부 지정 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격리 기간 중 코로나19 검사 시행(비용 자부담)
84	아랍에미리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입국 제한적 허용(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AE 거주비자 소지자는 △재입국용 포털사이트(uaeentry.ica.gov.ae)에서 신분증 번호, 여권 번호 등 입력, △항공기 탑승 전 출발 96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후 자가진단앱(AI Hosn)을 다운받고 14일 동안 자가격리 실시 등을 요건으로 입국 가능하나, 요건 변경 가능하니 출발 전 확인 필요 ※ (두바이) 7.7.부터 두바이 국제공항을 통한 외국인 입국 및 경유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상 방문비자 면제 중이나 조치 변동의 가능성이 크므로 출발 전 확인 필요 - 8.1.부터 두바이에 도착하거나 두바이 국제공항을 경유하는 모든 여행객들은 항공기 탑승 전 96시간 이내의 PCR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 - 두바이 거주비자 소지자는 입국 전 두바이 이민청의 외국인 거주자 등록부서(GDRFA)의 사전 승인 필요, 두바이 외 에미리트 거주비자 소지자는 두바이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 아부다비 이민당국(ICA) 승인 필요 - (경유) △수하물이 있는 경우 공항 내 경유 최대 24시간 허용(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 후 수하물을 찾아 재수속 필요), △수하물이 없는 경우 공항 터미널 내 호텔에서 48시간 이상 체류 가능 ※ 두바이 등 여타 에미리트에서 아부다비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48시간 이내 발행한 PCR 검사 음성확인서 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9.부터 두바이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방문비자 소지자는 14일간 아부다비 진입 불가, △아부다비 거주비자 소지자는 접경 지역 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시까지 주재국 정부 제공 시설에서 대기 후 14일 격리(시설 또는 자가)
85	아르메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의 항공 입국 허용, 육로 입국 제한 유지(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11.부터 국가비상사태 종료 ※ 육로 입국은 금지(단, △아르메니아 국민의 가족, △외교단·국제기구 대표 및 그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p>가족, △해당 국가의 방역 상황에 따라 아르메니아 정부로부터 특별 입국이 허가 된 자의 경우 예외)</p> <p>※ 아르메니아 국경 검문소 비자발급 중단</p> <p>- 재외공관 및 e-visa 시스템을 통해서만 입국비자 발급 가능</p> <p>※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감염검사 실시</p> <p>- 검사 결과에 따라 입원 및 14일 자가격리 조치(자가격리 기간 중 음성판정 시 자가격리 해제 가능)</p>
86	아르헨티나	<p>▶ 11.8.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10.23.)</p> <p>※ 3.20.부터 코로나19 의무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한 이후 30일씩 체류기간 연장을 발표하고 있으며, 그 후 만료되는 무비자 및 장기체류비자는 별도 신청 없이 기간 연장</p> <p>※ 외국인 입국시 아르헨티나 정부의 예외적 승인 필요</p> <p>- 모든 해외 입국자 14일간 격리 조치</p> <p>- △체류 일정, △아르헨티나 내 주소지, △건강진단서(필요시), △서약서(건강상태, 14일간 의무 자가격리 규정 준수, 격리 기간 중 증상 나타날시 신고) 제출</p> <p>- 격리 기간 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Cuidar” 설치</p> <p>- 증상이 있거나 체온이 37.5°C 이상일 경우 코로나19가 아니라는 공식 진단서 미제출시 아르헨티나 입국 및 비행기 탑승 금지</p>
87	아이슬란드	<p>▶ 한국 포함 10개 국가* 대상 입국 허용(7.16.)</p> <p>* 한국, 호주, 캐나다, 조지아, 일본, 뉴질랜드, 르완다,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p> <p>※ (필요서류) △유효한 여권, △한국 내 거주중임을 증빙하는 서류(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한국에서 출국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항공권 등)</p> <p>※ 입국 전 사전 등록 필요, 아이슬란드 도착시 ①코로나19 진단검사(PCR) 실시 후 5-6일간 의무 자가격리 및 재검사(비용 자부담), ②14일 의무 자가격리 중 선택</p>
88	아이티	▶ 발열체크(현장에서선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미제출) 및 연락처 제출
89	아일랜드	<p>▶ 모든 입국자(북아일랜드 및 이동제한 면제국*(한국 미포함) 제외) 대상 14일간 이동제한(한 곳에 머물며 가능한 한 타인과의 접촉 피할 것) 권고</p> <p>* 이동제한 면제국(Green List)(9.28.) : 사이프러스, 핀란드,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p> <p>※ 입국 전 '승객위치질문서(Passenger Locator Form)' 온라인 작성 제출</p>
90	아제르바이잔	<p>▶ 11.2.까지 국경봉쇄에 따라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p> <p>※ 단, 거주허가증과 출발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외국인 대상 입국 가능</p> <p>- 입국 후 2주간 격리조치(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는 격리 면제)</p> <p>- 10.1 현재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국경지역(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으로 인해 국제선은 바쿠-이스탄불 구간만 운항</p>
91	알제리	<p>▶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 대상 입국금지(5.28.)</p> <p>※ 단, 현지 진출 일부 기업 및 외교·공무수행을 위한 입국 시, 대사관을 통해 주재국 관련 부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입국 가능(8.1.)</p> <p>- 14일간 자가격리 필요(비용 자부담)</p>
92	앙골라	<p>▶ 9.9.부터 외국인 체류자(영주권자, 외교관, 투자, 유학, 노동비자 소지자 등) 출입국 허용(단기 방문객(여행, 상용)은 입국 불가)</p> <p>※ 모든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및 음성확인서 소지</p> <p>- 출국자의 경우 목적지 국가에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해당(우리 국민의 경우 출국 시 음성확인서 불요하나, 두바이 경유 시 동 확인서 필요)</p> <p>※ 9.29.부터 모든 입국자는 출발 72시간 전 입국사전신고서를 앙골라 코로나19 범정부대처위원회 홈페이지(http://covid19.gov.ao)에 등록 필요(코로나19 RT-PCR 음성확인서 포함)</p> <p>※ 8.15.부터 내국인 및 거주 입국자는 자가격리(앙골라 입국 전 출발국에서 실시한 RT-PCR 음성확인서 소지 필수, 앙골라 보건 당국에서 요청하는 자가격리 책임 동의서 서명 필수)</p> <p>- 단, 보건 당국 판단에 따라 시설 격리 또는 보건부 승인을 받은 호텔에서 격리가 가능하며, 앙골라 비거주 외국인(코로나19 음성확인자)의 경우 시설격리</p> <p>- 자가격리 대상자는 격리 7일 후 RT-PCR 음성확인서와 함께 보건당국이 발행</p>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하는 퇴소확인서 수령 후 격리 해제 가능
93	앤티가바부다	▶입국 전 7일 이내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시 건강상태 확인서 작성 및 발열 검사
94	에리트레아	▶항공 운항 중단과 국경 봉쇄에 따른 입국 금지(3.25.)
95	에스와티니	▶브라질 등 고위험 국가군 49개국(한국 제외)* 방문객 대상 입국금지(10.1.) * 브라질,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프랑스, 인도, 이라크, 이스라엘 미국, 영국, 등 ※ 입국시 출발 72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RT-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코로나 유증상시 코로나 검사(자비 부담) 및 지정된 격리시설에서 14일간 격리 조치(10.1)
96	에콰도르	▶8.15.부터 입국 전 10일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를 소지하고, 도착 시 무증상인 경우 의무 격리 면제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 또는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였으나 도착 시 유증상인 경우 입국 시 PCR 검사(자부담) 후 임시 숙소에서 10일간 의무 격리(유증상자의 경우 최소 3일 추가), 음성 판정 시 격리 해제 ※ 증상은 발열, 몸살, 근육통, 관절통, 미각 상실, 기침, 두통, 설사 등 포함
97	에티오피아	▶모든 내외국인 대상 입국 전 5일(120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 진단검사 명시 필요) 제출 및 입국 후 7일간 자가격리(단, 10세 미만 어린이와 경유승객은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10.5.) ※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시 7일, 미소지 시 14일 자가격리 ※ 경유승객은 공항 내 Interline office에서 경유 비자 발급(20미불), 경유 최대 시간은 72시간(72시간 초과하는 경우 출국 시 추가 50미불 지불)
98	엘살바도르	▶모든 입국자는 입국 전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입국 후 자발적 격리 권고 ※ 외교관, 항공 승무원, 2세 미만의 유아의 경우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99	영국	▶도착 48시간 전에 영국 정부 공식사이트를 통해 승객위치확인서(Passenger Locator Form) 제출 ▶한국 등 코로나19 저위험 국가발 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면제 ※ 최근 14일내 면제대상국 이외 지역을 방문 또는 경유한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100	오만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5.)(경유 제외) ※ 단, △소속 회사, △대사관, △국영항공공사(Oman Air 및 Salam Air)를 통해 오만 외교부에 입국 허가를 신청 후 승인을 받아 입국 가능 - 외국인 입국 시 14일간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입국자는 「Tarassud Plus」 앱 다운로드 및 위치추적 스마트 밴드 구입(5리알), △오만 내 유효한 여행자 보험 가입 - 외교관의 경우 상기 규정 예외, 14일 자가격리 의무
101	온두라스	▶8.17.부터 4개 국제공항* 및 모든 육로국경**을 통한 외국인의 입국 임시적 허용(단,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따라 불시에 입국금지 가능) * Tonconin(테구시갈파), Ramon Villeda Morales(산페드로술라), Juan Manuel Galvez(로아탄), Goloson(세이바) 국제공항 ** 6~18시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국경 ※ 해로를 통한 입국은 금지됨 ※ 입국 전 이민청의 사전 입국검사 홈페이지(https://prechequeo.inm.gob.hn)를 통해 입국 신청 ※ 입국 시 72시간 이내의 코로나19 검사(PCR 또는 특이도(specificity) 85% · 민감도(sensitivity) 98% 이상의 신속검사) 음성결과서 제출(경유 입국자의 경우, 도착 국가가 요구하는 검사 결과서 소지 필수) ※ 입국 후 자가격리는 불요하나 방역당국의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현재 발효 중인 통행금지로 이동이 제한됨 - 슈퍼마켓, 은행 등 필수 상업시설은 여권 뒷자리에 따라 대략 2주에 1일 이용할 수 있음 - 숙박예약 내역서, 패키지여행 구매 내역서, 교통수단 탑승권, 자동차 렌트 내역서 등을 소지하거나 온두라스인이 신청하는 특별통행허가증에 동행인으로 등록하여 단순한 통행 가능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102	요르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외국인 대상 7일 또는 14일 자가격리(9.29.) ※ △Green 및 Yellow 국가 출발의 경우 7일, △Red 국가 출발의 경우 14일 자가격리(우리나라의 경우 Green 국가로 분류되나 요르단 직항편이 없는 관계로 경유지에 따라 격리기준이 달라짐) ※ △출발지 출국 전 요르단 관광청 홈페이지(visitjordan.gov.jo)를 통해 전자신고서 제출 후 QR코드 수령(5세 이하 면제), △출발지 출국 전 120시간 이내의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지참(5세 이하 면제), △입국 시 코로나19 PCR 진단 검사 실시, △건강상태확인서 및 위치확인서 제출, △체류 기간 동선확인을 위한 모바일 앱 AMAN 다운로드, △요르단 내에서 코로나19 치료비를 보장하는 여행자 의료보험 가입 필수 등
103	우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테베 국제공항과 육로 국경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대상 출발 시점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 - 음성확인서 소지자의 경우 2020.10.01.부터 자가격리 면제(음성확인서 미소지자의 경우 도착 즉시 코로나19 검사 실시 및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비용 자부담) - 모든 출국자의 경우 120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0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 ※ 선교사, 봉사단 등 여타 목적의 외국인의 입국 허가 여부는 추후 통지 예정
104	우루과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외국인(영주권자 제외) 입국금지(3.24.) ※ 단, △우루과이 거주 외국인, △항공기 및 선박의 승무원, △외교관, △우루과이 보건당국이 허가한 크루즈선, 선박, 항공기의 승객, △난민, △가족 간 재회의 사유, △연기할 수 없는 업무상, 경제적, 법무상의 사유로 소관 부처를 통해 이민청의 입국 허가를 받은 경우 입국 가능(입국 후 자가격리 의무 실시)(6.8) ※ 예외적으로 입국이 가능한 경우 출발 72시간 전 실시한 코로나19 RT-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코로나19 방역정보 앱 'Coronavirus UY' 설치 권장 - 상세한 조건 내용은 주우루과이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3.30.부터 우루과이 연결 국제선 정기항공편 운항 중단(3.28)
105	우크라이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8.부터 외국인 입국 허용 ※ 단, 코로나19 치료비용(격리비용 포함)을 처리할 의료보험 소지 필요 ※ 우크라이나 정부의 자가격리 시행 기준 상 최근 14일 이내 레드존 국가(한국은 그린존 국가)를 방문 후 입국하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 격리 시행(6.15.) - 그린존 국가 리스트(10.23.) : https://moz.gov.ua/uploads/5/26803-231020.pdf - 격리면제대상 : 12세미만 아동, 대학 유학생, 입국 후 2일내 출국예정 확인문서 소지자, 외교공관 직원/가족, 정부대표단, 선박/항공/철도 승무원,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인 자(입국 후 시행한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격리 종료)
106	이라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 운영 및 상업용 항공 운항 재개로 모든 입출국 정상화(7.23.) ※ 모든 입출국자는 탑승일 기준 72시간 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지참 필요(8.17.) ※ 기업 직원은 입국 후 소속기업 사업장 내에서, 외교관 및 공식출장단은 소속 공관 내에서 14일간 격리 실시 ▶ (쿠르드지방정부) 외국인 입국 허용(7.23.) ※ 도착 시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 검사 결과 제시 또는 자비부담 PCR 검사 후 14일간 자가격리(서약서 작성) - PCR 검사 음성이 확인된 대표단, 출장자 및 단기 관광객은 자가격리 불요
107	이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착 96시간 이내에 발급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 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지정시설에서 14일간 격리(검사 및 격리비용 자부담) ※ 8.2.부터 관광비자 및 도착 관광비자 발급 중단(노동, 유학, 종교 등 복수비자 소지자는 해당 없음)
108	이스라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14일 이내 한국 등 그린국가를 제외한 레드국가(코로나19 위험국가)를 방문 후 입국하는 여행객 대상 지정시설(또는 자가)에서 14일간 격리 조치 ※ 한국은 10.15.부터 그린국가로 분류되어 한국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은 14일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p>격리 조치 면제</p> <p>※ 입국허가 관련, 해당 국가 주재 이스라엘대사관에서 입국허가서를 사전에 취득해야하며, 항공기 탑승 24시간 이내에 온라인으로 이스라엘 보건부에 개인 정보 및 건강확인서 양식을 기입하여 제출 필요</p>
109	이집트	<p>▶ 9.1.부터 항공, 육로, 선박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현지도착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검사 음성확인서(영문 또는 아랍어) 제출(6세 미만 아동은 PCR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 면제)의무</p> <p>- PCR 검사 음성확인서에는 검진 기관 도장, 검체 채취 방법, 검체 채취 시간, 검사 유형(RT-PCR) 등이 반드시 포함될 필요</p> <p>※ 관광전세기 등 직항편을 통해 이집트의 주요 관광지(샤름엘셰이크, 후루гада, 타바, 마르사알람, 마르사마트루)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 관광객중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의 경우, 도착 공항에서 PCR 검진 실시(30\$ 자부담) 및 검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예약된 숙소에서 대기</p> <p>※ 체류기간 동안 유효한 여행자보험 필요 항공사 조치가 수시 변경되므로 항공사 등을 통해 변경사항 확인 필요</p>
110	이탈리아	<p>▶ 7.1.부터 한국 포함 EU+ 역외국가(한국, 호주, 캐나다, 조지아, 일본, 뉴질랜드, 르완다, 튀니지, 우루과이, 태국) 대상 입국 제한 완화</p> <p>※ △입국 시 입국사유 신고서 제출, △14일간 자가격리, △입국 후 지역 보건 당국에 통보 및 등록(전화, 인터넷)</p> <p>※ 스페인,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체코 방문 후 입국하는 여행객 대상 코로나19 전수 검사</p> <p>- 탑승 72시간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있는 경우 검사 면제</p> <p>※ △자국민(영주권자,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등)은 입국금지 국가로부터도 입국이 가능하나 자가격리의무나 검사 의무는 동일함</p> <p>※ 업무·건강·학업·기타 필수적 사유인 경우 입국 가능</p> <p>- △입국자 전원 출발 시 여행 목적, 주재국 내 거주지 주소(자가격리 장소), 해당 장소 이동 차량, 자가격리 기간 사용할 휴대폰 번호 등을 기록한 자술서 운송업체(항공사 등) 제출 필수, △운송업체는 탑승전 탑승객 서류 확인,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권고, △체온 37.5도 이상 혹은 서류 불충분시 탑승 금지 조치, △탑승객간 간격 최소 1미터 보장, 승무원 보호장비 이용 권고, △입국자 전원(무증상자 포함), 해당 지역보건당국에 입국 사실 신고 및 출발시 제출한 자가격리 장소에서 14일간 격리 의무화,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 불가시, 시민 보호청과 협력하여 자가격리 방안 및 장소 검토(관련 비용은 자부담)</p> <p>- 격리의무 예외 : 업무·건강상 필수 목적의 단기체류자(120시간 이내 체류자) 및 항공기 승무원 등</p>
111	인도	<p>▶ 10.21.부터 관광 이외 다른 모든 목적의 인도 방문 허용</p> <p>※ e-visa, 관광비자, 의료비자를 제외한 모든 비자의 효력정지 해제</p> <p>▶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를 실시, 증상에 따라 조치(5.24.)</p> <p>※ △원칙적으로 14일 격리(시설격리 7일, 자가격리 7일), △8.8.부터 출발 전 72시간 전에 포털(www.newdehliairport.in)에 self-declaration, 코로나19 음성확인서(출발전 96시간 내 발급)를 제출하면 시설격리 면제, 총 14일 자가격리만 실시(자세한 내용 주인도대사관 홈페이지 참조)(8.3.)</p> <p>- PCR 음성확인서는 입국시 입국심사장에서도 확인하므로 반드시 소지</p> <p>▶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해당국 인도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한 이후, 비자를 발급받을 때 필요하며, 인도 입국 심사과정에서도 반드시 지참할 필요(3.10.)</p>
112	인도네시아	<p>▶ 4.2.부터 모든 외국인 인도네시아 입국 및 경유 금지(3.31)</p> <p>※ (예외 입국 대상) △장기체류허가(KITAS/KITAP) 소지자로서 체류기간 및 재입국허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사람 △외교비자/관용비자 소지자, △외교/관용 체류허가 소지자, △의료, 식량 지원 등 인도적 지원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 △육로/항만/항공 수송기 종사자, △국가전략사업에 참여하는 외국국적 근로자</p> <p>※ (입국 방역조치) △입국하는 외국인은 출발일 전 7일 이내 발행한 PCR 음성 결과를 증명하는 건강확인서를 소지, △건강확인서 미소지, 7일이 경과한 PCR 음성결과서 소지, PCR 음성결과 미포함시 입국장에서 신속진단 실시, △신속진단 결과 양성이면 지정 병원으로, 음성이면 격</p>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p>리시설에서 격리하고 PCR 검사 실시</p> <p>※ (입국 후 관리대책) 14일 동안 자가격리 (건강확인서를 대사관에 제출하고 이를 관할 보건 당국이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관리 미흡)</p>
113	일본	<p>▶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미국 등 159개 국가 및 지역에 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 등 원칙적으로 입국 금지</p> <p>※ 다음의 경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국 허가</p> <p>① 8.31.까지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등 체류 중인 국가의 일본공관에서 교부받은 「재입국관련 서류제출 확인서」와 체류국 출국 전 72시간 이내 취득한 「검사증명」 소지 필요 <p>② 9.1.이후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출국 전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받은 「수리서」와 체류국 출국 전 72시간 이내 취득한 「검사증명」 소지 필요(수리서를 교부받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입국 거부 대상이 되며, 재입국관련 서류제출 확인서, 수리서 및 검사증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p>③ 다음 신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한국 등 체류하는 국가의 일본공관에서 사증 발급 및 체류국 출국 전 72시간 이내 취득한 「검사증명」 소지 필요(입국 목적 등에 따라 일본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31까지 재입국허가를 받고 입국거부 대상지역으로 출국한 외국인 중, 입국 거부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재입국허가 유효기간이 만료하여 그 기간 내 재입국이 불가능했던 경우 - 일본인 · 영주권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정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일본에 가족이 체류하고 있으며, 가족이 분리된 상태에 있는 경우 - 교육 · 교수 · 의료의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 (10.1.부터 입국) 사업상 필요한 인재, 유학, 가족 체재 등의 재류자격을 가진 자에 대해 방역조치를 확약할 수 있는 기업 및 단체가 있는 경우 <p>※ 필요 서류 및 상세 수속 등에 관해서는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또는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p> <p>※ 이외 특별히 인도적 배려를 할 만한 사정이 있는 등 개별 사안에 대해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입국 허가</p> <p>※ △특별 영주권자, △외교 및 공무 체류자격자는 「검사증명」 없이 입국</p> <p>▶ (시증 제한) 추후 공지 시까지 △단수복수 사증 효력 정지, △한국, 홍콩, 마카오 등에 대한 시증면제조치 정지</p> <p>▶ (검역 강화) 전세계발 모든 입국자(일본인 포함) 대상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14일간 대기 및 대중교통의 이용 자제 요청, 한국 등 입국 금지 국가에 체류 이력이 있는 모든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p> <p>▶ (항공기 도착공항) 중국 및 한국에서의 여객기편 도착공항을 나리타·간사이공항으로 한정</p>
114	자메이카	<p>▶ 6.15.부터 국제 공항 및 항구 운영 재개</p> <p>※ 10.10.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항공기 탑승 시 사전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 또는 항원 검사) 소지 의무</p> <p>※ 사전에 자메이카 보건부 웹사이트(visitjamaica.com)에 접속하여 여행 허가 취득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메이카 국민 및 상주 외국인, 14일 이상 체류 사업목적 외국인 방문객의 경우 보건검사 및 위험 평가 실시(14일간 자가격리) - 14일 미만 체류 사업목적 외국인 방문객의 경우 보건검사 및 위험 평가 실시(숙소에서 체류 가능/보건 수칙을 준수하며 사업 활동 가능) - 관광목적 외국인 방문객의 경우 보건검사 및 위험 평가 실시(체류하는 숙소로 즉시 이동 후 동 시설에서만 체류 가능)
115	잠비아	<p>▶ 입국일로부터 2주 이내(가능하면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지참(미지참 시 입국거부) 및 입국일로부터 10일간 자가격리</p> <p>※ 유증상시 또는 무작위로 입국자 중 일부 승객을 정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 재실시(비용 자부담)</p>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시 작성한 건강체크리스트 및 제반서류의 정보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전담부서의 모니터링을 14일간 받음 ※ 단수비자(도착비자) 발급 재개 	
116	적도기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항공 및 해상노선 조건부 운항 및 입국 허용(6.12) ※ 모든 국제선 승객은 항공기 탑승시점 기준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확인서 지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지참시 검사비용 지불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숙박시설 대기 - 48시간이 지난 음성확인서 소지자 입국 불허하나, 출발국가에 따라 허용 - 위조가 의심되는 음성확인서 제출 경우, 입국 시 공항에서 추가 검사 실시 예정 ※ 국제기구 및 외교공관 관계자는 입국 전 사전에 주재국 외교협력부에 항공편 정보(편명, 출발지 등)를 포함한 소속직원(가족 포함)의 도착 날짜 및 시간 통보 	
117	조지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경봉쇄 및 외국인 입국금지(6.25.) ※ 단, 비즈니스 목적의 경우, 모든 국가로부터 입국을 허용하고 있으며, 14일 자가격리 또는 매 72시간마다 PCR 검사 실시 중 택일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일 자가격리 및 PCR 검사 비용 모두 방문객 본인 부담으로, 매 72시간마다 PCR 검사를 선택할 경우 격리 없이 모든 활동이 가능하며, 비즈니스 목적 방문은 조지아 정부 웹사이트(www.stopcov.ge)에서 사전 신청하고, 조지아 정부 승인 후 입국 가능 	
118	중국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28.(토) 0시부터 기존 유효 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 입국 잠정 중단, 단, 일부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9.28(월) 0시부터 비자 재신청 없이 입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류(Z), 동반 등 개인사무류(S1), 친지방문류(Q1) - 외교, 공무, 의전 비자 또는 C비자(승무원 등)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그린카드(영주권)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중국 국내에서 필요한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활동에 종사하거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이유가 있을 경우, 중국의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해 입국 비자 신청 가능 ▶ 아울러, <u>한국인의 경우</u>, 8.5.(수)부터 △취업, △유학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거나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자는 비자 신청 가능하며, 9.28.(월) 0시부터 △취업류(Z), △동반 등 개인사무류(S1), △친지방문류(Q1)의 유효한 거류허가증 소지자는 비자 재신청 없이 입국 가능 ※ 상세 필요 서류 및 절차는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비자 신청은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홈페이지(https://www.visaforchina.org)를 통해 가능 ▶ 9.9.부터 모든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은 탑승 전 3일(72시간) 내 지정 검사기관에서 코로나19 핵산검사(PCR) 후 음성증명서 발급 및 제시 요망 ※ 상세 실시 절차는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 - 영사 및 비자 업무란 공지문 참고 ▶ 모든 입국자 대상 핵산 샘플 채취 검사 실시(4.1) ▶ 육로 국경 검문소를 통한 제3국 인원의 출입국 금지 ※ 중국 각 지역 방역 방침은 변동가능성이 있으니 유의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각 성·시별 방역상황에 따라 격리지침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바, 해외입국이 아닌 중국 내 지역간 이동시, 해당 지역 격리지침 확인 및 준수 필요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간쑤성 도착시</u>,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추가로 14일간 자가격리 실시(비용 자부담) ※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간쑤성에 도착하는 경우, 중국 내 경유지에서 14일간 격리조치를 완료하였더라도 간쑤성 도착 후 14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p>일간 자가격리 추가 실시</p>
		2 광둥성	<p>▶ 광둥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및 핵산검사 2회 실시</p> <p>※ 일부 지역에서는 격리기간 중 또는 격리해제 후 추가(1-2회) 핵산검사 실시</p> <p>※ 중국 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 타지역 14일간 격리해제 증명서 소지 시 격리 면제</p>
		3 광시좡족자치구	<p>▶ 광시좡족자치구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및 핵산검사 2회 실시</p> <p>※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 타지역 14일간 격리해제 증명서 소지 시 격리 면제</p>
		4 구이저우성	<p>▶ 구이저우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최근 14일 내 해외 방문 이력 있는 국내 이동자 포함)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p>
		5 네이멍구자치구	<p>▶ 네이멍구자치구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 (비용 자부담)</p> <p>※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네이멍구자치구로 이동 가능</p> <p>- 단, 최근 7일 내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 제출 필요, 도착 후 14일간 격리(지정시설 또는 자가) 후 핵산검사 재실시 요망</p>
		6 닝샤후이족자치구	<p>▶ 닝샤후이족자치구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비용 자부담)(3.16)</p>
		7 랴오닝성	<p>▶ 랴오닝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2회, 혈청항체검사 1회 실시(비용 자부담)(4.14)</p> <p>※ 지역별로 7-14일간 추가 자가격리</p> <p>- (선양시) 선양시로 도착한 선양시 거주자의 경우,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격리 해제</p>
		8 베이징시	<p>▶ 베이징시 도착시, 6.8. 0시부터 모든 베이징행 국제선 항공편의 탑승객 전원(환승객 포함)은 16개 지정공항(톈진, 스좡좡, 타이위안, 후허하오터, 지난, 칭다오, 난징, 선양, 다롄, 정저우, 시안, 청두, 창사, 허페이, 린저우, 우한(예비)) 경유지에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 후 우회 진입만 가능(모든 비용 자부담)</p> <p>- 해외입국자는 경유지나 목적지에서 14일간 시설 격리 완료시 베이징 복귀 후 추가 7일간 자가 건강 모니터링 실시(4.30)</p> <p>※ 입국 전 모든 인원은 일정 및 관련 정보를 직장과 거주단지에 사전보고, 입국 시 공항, 역, 검문소별 지침 숙지 및 검역 협조(경유지에서 발급받은 격리해제증명서 반드시 지참)</p> <p>※ 4.30.부터 호텔 투숙시, 핵산검사 증명서 제출은 불필요하지만, 젠강바오(健康宝) 그린 바코드를 제시해야 체크인 가능(호텔에 사전 연락하여 투숙시 필요사항 문의 요망)</p>
		9 산둥성	<p>▶ 산둥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3.31)</p> <p>※ 해외에서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산둥성에 도착하는 인원은 항공편을 통해서만 산둥성에 진입할 수 있으며, 최초 도착지에서 격리한 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 산둥성 도착 후 남은 기간 추가 격리(3.27)</p> <p>※ 3.18부터 해외에서 산둥성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의 격리비용은 자부담이며, 기본의료보험 또는 상업보험 미가입자의 진료비용도 자부담</p> <p>※ 산둥성 각 도시는 해외입국자 사전신고제 실시(기 입국자 사후 신고) 중이며, 시/구별로 내용이 상이하므로 거주지 관계기관(주민위원회)에 상세내용 확인 필요</p> <p>※ 만 70세 이상 노인, 만 14세 이하 미성년자, 임산부, 기저질환자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시 △핵산검사 음성 판정, △거주지 주민위원회의 자가격리 동의서, △방역당국 검토 후 승인이 있을 경우 자가격리 전환 가능(자가격리자는 격리 해제 하루 전 거주지 주민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에 격리해제 예정임을 사전 통보할 필요)</p>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10	산시성 (陝西省)		<p>▶ 산시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추가로 14일간 자가격리 실시(비용 자부담)(9.15)</p> <p>※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산시성에 도착하는 경우, 경유지에서 14일간 격리조치를 완료하였다더라도 산시성에서 14일간 자가격리 추가 실시</p>
11	산시성 (山西省)		<p>▶ 산시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비용 자부담)(5.19)</p> <p>※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산시성으로 이동 가능</p> <p>- 단,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p>
12	상하이시		<p>▶ 상하이시 도착시,</p> <p>① 목적지가 상하이시이고, 상하이시에 고정 거주지가 있으며, 자가격리 조건(1인 1가구 또는 1가족 1가구, 혹은 공동 주거인이 함께 자가격리 실행 승낙)에 부합하는 입국자는 본인 신청 시 7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7일간 자가격리 가능(단, 지정시설 격리 5일째 되는 날 핵산검사 후 검사결과 음성 필요)</p> <p>- 본인이 희망하지 않거나 상기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14일간 지정시설 격리</p> <p>② 최종 목적지가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인 입국자는 3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해당 성 내 지정도시로 이동하여 11일간 지정시설 격리</p> <p>-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 상하이시에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가능</p> <p>③ 최종 목적지가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이외 지역인 해외입국자는 상하이시에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p> <p>※ 단, 노인, 미성년자, 임산부, 거동이 불편한 자, 노인 또는 어린이를 돌봐야 되는 자, 기저 질환자 등은 핵산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자가격리 조건에 부합할 경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자가격리 신청 가능</p> <p>※ 3.25부터 상하이 홍차오 공항의 국제선(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 기능을 잠정 중단하고 이를 상하이 푸둥공항으로 이전하여 운영</p>
13	시짱자치구		<p>▶ 시짱자치구 도착 전,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중국 내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후 진입 가능(6.8)</p> <p>※ 단,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p>
14	신장위구르자치구		<p>▶ 신장위구르자치구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핵산검사 실시 후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6.8)</p> <p>※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치고 도착하는 인원내 대해서도 최근 7일 내 핵산검사 음성증명서 제출 요구 및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핵산검사 재 실시</p>
15	쓰촨성		<p>▶ 쓰촨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양성판정자 및 기타 특이증상자는 병원 이송(모든 비용 자부담)(3.27)</p> <p>※ 14일 지정시설 격리해제된 후에도 7일간 자가격리 실시</p> <p>※ 목적지가 쓰촨성 외 다른 지역일 경우, 쓰촨성 내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핵산검사 통과시 해당 지역으로 이동 가능</p> <p>※ 특수상황일 경우 자가격리 가능하며, 개인 희망시 소속 구 또는 현에서 해당 여부 심사</p>
16	원난성		<p>▶ 원난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최근 14일 내 해외 방문 이력 있는 국내 이동자 포함)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3.26)</p> <p>※ 입국자가 자원하여 자비로 핵산검사 2회, 혈청항체검사 1회를 받은 뒤 음성 판정 받을 경우, 7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나머지 7일은 자가격리 전환 가능</p> <p>※ 입국 3일 전 직접 또는 회사, 호텔, 가족구성원을 통해 거주지 관할 정부에 입국 계획 통지 필요</p> <p>※ 원난성 경유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p> <p>※ 육로를 통한 제3국인 출입국 금지(19개 육로 입국장 및 14개 통로 여객 운송 기능 잠정 중단, 기타 통로 폐쇄)</p>
17	장시성		<p>▶ 장시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핵산검사 실시하여 △음성판정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양성판정자 및 유증상자는 병</p>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18	장쑤성		<p>원 이송(모든 비용 자부담)(3.25)</p> <p>▶ 장쑤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집중 의학관찰(비용 자부담 원칙하 각 지역별 조치 상이)(3.23)</p>
19	저장성		<p>▶ 저장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집중 의학관찰(비용 자부담)(3.18)</p> <p>※ 최종 목적지가 저장성인 경우, 입국 전 사전 신고 플랫폼(주상하이 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 QR코드 참고)을 통해 관련 정보 기입 / 이미 입국한 경우, 거주지 관할사무소 또는 직장에 관련 상황 보고 및 방역 규정 준수</p>
20	지린성		<p>▶ 지린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3.1)</p> <p>※ 지역별로 7-14일간 추가 자가격리</p> <p>※ (창춘시) 창춘으로 도착한 창춘 거주자의 경우,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격리 해제</p> <p>※ 만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영유아, 신체기능 및 지적능력을 상실한 자, 기저질환자 및 자택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하는 재학생 등은 자가격리 가능</p> <p>※ 3.21부터 국외에서 지린성으로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민의 집중격리 기간 중 숙식비용은 자부담이며, 확진 후 의료비용은 의료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환자 개인 부담, 이외 이동 비용·핵산검사·폐 CT검사 비용은 무료</p>
22	충칭시		<p>▶ 충칭시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핵산 검사 진행, △음성일 경우 각 소속 구청에서 호송하여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양성 또는 기타 특이증상이 있을 경우 병원으로 이송(비용 자부담)(3.26)</p>
23	칭하이성		<p>▶ 칭하이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비용 자부담)(6.8)</p> <p>※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칭하이성으로 이동 가능</p> <p>- 단, 최근 7일 내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 제출 및 도착 후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요망</p>
24	텐진시		<p>▶ 텐진시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2회(입국 시 1회, 격리 기간 중 1회) 실시(비용 자부담)(6.5)</p> <p>※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텐진시로 이동 가능</p> <p>- 단,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p>
25	푸젠성		<p>▶ 푸젠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후 추가로 7일간 자가격리(단, 최종 목적지가 다른 성일 경우 7일간 자가격리 불요) 및 핵산검사 2회 실시</p> <p>※ 중국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 타 도시에서 21일 이상 체류 후 방문 시 격리 면제 가능(격리해제 증명서 소지 필요)</p> <p>※ 일부 지역에서는 핵산검사 3회 실시 및 별도 혈청검사 실시</p>
26	하이난성		<p>▶ 하이난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및 핵산검사 2회 실시</p> <p>※ 중국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 타지역 14일간 격리해제 증명서 소지시 격리 면제</p>
27	허난성		<p>▶ 정저우시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의학관찰 및 핵산검사 실시(비용 자부담)(3.29)</p> <p>※ 입국자가 자원하여 자비로 핵산검사 2회, 혈청항체검사 1회를 받은 뒤 음성 판정 받을 경우, 7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나머지 7일은 자가격리 전환 가능</p> <p>※ 허난성 입국 예정자는 입국 48시간 전까지 본인 또는 가족/회사가 거주지 방역지휘부서에 관련 정보 신고 요망</p>
28	허베이성		<p>▶ 허베이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비용 자부담)</p> <p>※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허베이성으로 이동 가능</p> <p>- 단, 허베이성 각 지역 거주위원회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로 지정시</p>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p>설 또는 자가격리, 핵산검사 등 실시 가능</p> <p>▶ 헤이룽장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2회, 혈청항체검사 1회 실시(비용 자부담)</p> <p>※ 지역별로 7-14일간 추가 자가격리</p> <p>※ (하얼빈시) 하얼빈시로 도착한 하얼빈시 거주자의 경우,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격리 해제</p> <p>※ 운송수단 승선 검역, 건강신고서 대조 확인, 체온 측정, 역학조사, 샘플 채취, 집중 격리 총 6가지 항목 무조건 실시</p> <p>※ 국외에서 출발하여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포함</p> <p>※ 만 70세 이상 노인, 만 14세 이하 미성년자,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 집중격리 실시가 부적절한 자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자가격리 가능</p>
29	헤이룽장성	
30	후난성	<p>▶ 후난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p> <p>※ 중국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14일 격리(타지역 격리해제 증명서 소지시 격리 면제)</p>
31	후베이성	<p>▶ 우한시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3.17)</p> <p>※ 중국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진입하는 경우, 해당 도시의 14일간 격리 완료 증명서 소지 필요</p>
119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p>▶ 코로나19 발병국 방문 후 입국 시 21일간 자가격리</p> <p>※ 입국 시 마스크 착용, 손소독, 체온 검사, 개인소지품 소독, 설문지 작성 등 조치 시행</p>
120	지부티	<p>▶ 7.17.부터 국경(육해공) 재개방</p> <p>※ 모든 내외국민 입국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비용 자부담)</p>
121	짐바브웨	<p>▶ 모든 외국인 대상 △출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지참 권장, △유증상 시 격리시설로 이송되거나, 자가격리 예정인 시설에서 진단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조치, △입국일로부터 7-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p> <p>※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미지참시 또는 음성확인서를 지참하고 있더라도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진단검사 실시(60\$, 자부담)</p> <p>※ 10.1.부터 관광 및 사업 목적 등 기존 단수비자(도착비자) 발급 재개</p>
122	차드	<p>▶ 입국 전 7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및 7일간 자가격리(7.30.)</p> <p>※ 입국 7일 후 코로나19 PCR 검사 재실시</p>
123	칠레	<p>▶ 11.13.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10.26.)</p> <p>※ 단, 영주 또는 거주비자, 현지 신분증 보유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입국 허용</p> <p>- 칠레 사증 보유자라도 외국인 등록증을 미취득한 경우 입국 불가</p> <p>※ 입국 가능 대상자 14일 의무격리 면제 절차 신설 및 발표(8.30.)</p> <p>※ 외교관, 정부대표단, 선박 및 항공 승무원 등은 해외 칠레 공관에서 비자를 신청하고 입국허가증을 발급받아 입국 가능</p> <p>※ 환승 및 출국은 가능(4.22.)</p>
124	카메룬	<p>▶ 추후 공지시까지 모든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4.30)</p> <p>※ 카메룬 입국 사증 발급 중단(기존 복수비자 소지자 입국 가능)</p> <p>- 카메룬 도착 전 3일 이내 시행한 코로나 19 검사 음성결과 제출 필요</p> <p>- 카메룬 항발 항공기 탑승 시, 탑승 중 마스크 항상 착용(음식/음료 섭취, 약품 복용시 제외)</p>
125	카보베르데	<p>▶ 입국 시 탑승 전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10.12.)</p>
126	카자흐스탄	<p>▶ 1회 입국시 최장 30일 무비자 입국 허용(6.29.)</p> <p>※ 제3국 출발 항공편 이용시 입국, 환승 제한 규정 폐지(9.18.)</p> <p>▶ 10.6.부터 출발 국가를 불문하고, 출발 전 72시간 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미소지 외국인의 입국 불허</p> <p>- 카자흐스탄 국적자 및 영주권자 음성확인서 미소지시, 입국 즉시 PCR 검사를 위해 2일간 시설 격리(10.27 시행)</p> <p>- 만 5세 이하인 자는 음성확인서 소지 면제(10.27 시행)</p>
127	카타르	<p>▶ 8.1.부터 코로나19 저위험국가(한국 포함 40개국)에서 출발하는 거주허가증 소지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적으로 허용(7.21.)</p>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허가 신청 필요(관련 내용은 주카타르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 실시, 자가격리 서약서 작성, 7일간 의무 자가격리 ※ 입국 후 6일 째 되는 날 재검사, △음성인 경우 입국 후 7일차에 격리 해제, △양성인 경우 14일간 추가 의무격리 실시 ※ 코로나19 저위험국가 외 국가에서 출발하는 거주허가증 소지 외국인의 경우, 입국 허가를 받아 지정된 호텔(사전 예약 필수)에서 최소 7일 의무 격리(입국 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결과에 따라 격리 연장 가능)
128	캄보디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30.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캄보디아로 입국하려는 모든 외국인은 해당국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고, 비행기 도착시간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및 5만불 이상 보상 가능한 보험증 제출(3.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사 기장 및 승무원의 경우 입국제한조치 적용 예외 ※ (입국 절차) 캄보디아 도착 시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실시 후 지정호텔 등 격리시설로 이동하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 코로나19 진단검사, 격리 및 치료비용 자부담하며, 이를 위해 프놈펜 공항 도착 시 2,000미불 공항 내 은행 창구에 예치(6.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승객이 음성으로 판정될 경우 자택에서 14일간 자가격리, △한명이라도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 모든 승객은 캄보디아 정부 지정 시설에서 14일간 격리(5.20.)
129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31.까지 미국인 제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9.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8.부터 외국인의 인도적 목적 방문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 공중보건청 입국규제 예외 및 제한격리면제 승인을 받은 자로, △가족의 임종, △위독한 사람의 간병, △치료를 받는 자에 대한 돌봄, △장례식 또는 임종식 참석 등 ※ 10.8.부터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확대 가족의 비필수적 방문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 서면 승인을 받은 자로, △1년 이상 동거한 교제 중인자, △성년 자녀, △성년 자녀의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에 해당되어야 하며, △캐나다 입국 후 최소 15일 이상 체류 조건을 충족해야 함(14일 이내 단기 방문이면 필수적 목적 제시 필요) ※ 10.20.부터 외국인 학생 및 동반 직계가족 입국 허용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 여행 및 학업에 필요한 문서를 소지하고, 정부로부터 코로나19 대비 계획을 승인받은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경우에 한함 ※ 6.8.부터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직계 가족의 비필수적 방문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무증상자로, △직계가족으로 분류되는 배우자, 사실혼 관계자, 부양 자녀 및 그의 부양자녀, (양)부모, 법적 보호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캐나다 입국 후 최소 15일 이상 체류 조건 충족하여야 함(14일 이내 단기 방문이면 필수적 목적 제시 필요) ※ 캐나다에 거주 중인 비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이면서, 가족 재결합을 목적으로 캐나다 정부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 입국 가능 ※ △항공기 승무원, △외교관, △국제선 환승객은 입국 가능(캐나다내 국내선 경우 불가) ※ 취업유학생 비자 소지자 입국 관련, 구체적 예외 해당자, 입국 제한 예외적용 가족 범위, 유증상자의 캐나다-미국 육로 국경 입국 허용 여부 등 주캐나다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상세내용 참고 요망(http://overseas.mofa.go.kr/ca-ko/index.do) ※ 국적 불문 모든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자는 코로나 증상시 탑승 불가 ※ 미국에서 입국하더라도 탑승일 이전 14일 이내 미국과 캐나다 외 지역에서 체류한 외국인은 탑승 불가 ※ 11.21.까지 캐나다-미국 육로 국경 간 비필수적 이동 제한(10.19.) ※ 3.26.부터 입국가능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130	케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부터 국제선 운항 재개(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코로나19 증상(기침, 발열, 호흡기 증상)이 없는 경우 격리 면제(한국 등 주재국이 지정한 국가에서 출발하는 사람에게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성확인서는 케냐 도착 시간 기준 96시간 이내 검사를 받아 발급받은 영문확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p>인서만 인정(한글 및 번역본 불인정, 검사 시 반드시 여권을 소지하고 영문확 인서상에 여권상 이름, 여권번호, 검사받은 날짜 및 시간 반드시 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냐 보건부 홈페이지(https://bit.ly/covid19month)에 접속, 인원별로 Travelers Health Surveillance Form을 작성한 후 각자 전송받은 QR코드를 케냐 공항 입국 시 제 공(핸드폰 또는 출력물) ※ 통행금지 시간(오후11시~익일 오전 4시) 이후 입국자들은 유효한 항공권(탑승 권 등) 지참시 호텔 혹은 거주지까지 이동 가능
131	코모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냐,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등 이웃국가 대상 항공운항 재개(9.7.) ※ 비행기 탑승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필수 ※ 모든 입국자는 입국 즉시 지정호텔에서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 지 최대 4일간 격리
132	코스타리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포함 52개국 및 미국 24개주(뉴욕,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에서 항공기로 출발 하는 외국인의 입국 제한적 허용 ※ △입국 전 입국 허용대상 국가지역에서 최소 14일간 체류, △입국 전 코로나19 관 련 전자 자가진단서 시스템상 제출(서면제출 불가), △코스타리카 보험공사(INS)에 보험가입 또는 코로나 19에 대한 최소한의 의료비용(입원비) 및 최소 14일간의 숙 박비 보전이 가능한 여타 국제보험 가입, △코로나19 증상 미발생 ※ 영주권자 등 각 체류자격별 입국 조건은 주코스타리카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 이지 참고 ▶ 11.1.부터 코스타리카 이민당국에서 발표한 입국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모든 국 가를 대상으로 입국 허용 예정
133	코트디부아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항공편 운항 재개 및 입국 허용(7.1.) ※ 입국 시 항공여행 증명서 및 7일 이내에 검체를 채취하여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 (항공여행 증명서) 홈페이지(deplacement-aerien.gouv.ci)에 접속하여 인적 사 항 및 항공편 정보 입력(수수료 2,000 FCFA 지불) - 체온이 38도 이상이거나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승객은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비용 자부담)
134	콜롬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1.부터 7개국(미국, 멕시코, 브라질, 에콰도르, 볼리비아, 과테말라, 도미니카 공화국) 간 국제선 여객기 운항 재개 및 외국인 입국 허용(단, 육상 및 해상 국 경 봉쇄는 유지) ※ △항공기 탑승 전 96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소지, △ 항공기 탑승 전 24시간 이내에 콜롬비아 이민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작성 (출국 시에도 작성 필요), △콜롬비아 보건부의 CoronApp 설치 - 입국 조건 충족 시 자가격리 면제
135	콩고공화국	▶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6.6.)
136	쿠바	▶ 모든 외국인(관광객)의 입국 금지(3.31.~) (단, 영주권자의 입출국은 가능)
137	쿠웨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부터 코로나19 고위험국가* 외 제3국가에서 최소 14일 이상 체류하고 PCR 음성 확인서(72시간 이내 발급) 제출 시 입국 허용(8.1) *방글라데시, 필리핀,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이란, 네팔, 중국, 브라질, 콜롬 비아, 아르메니아, 시리아, 스페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이라크, 멕시코, 인 도네시아, 칠레, 이집트, 레바논, 홍콩, 이탈리아, 북마케도니아, 몰도바, 파나 마, 페루,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코소보, 도미니카, 프랑스, 예멘, 아르헨티나 ※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2019년 9월 1일 이후 쿠웨이트를 출 국했다더라도 유효한 쿠웨이트 거주비자 및 Civil ID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외 국인에 대한 입국 허가(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
138	쿡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뉴질랜드 제외) 방문 후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4~.) ※ 쿡제도 입국을 위해 뉴질랜드에서 14일간 자가 격리 필요
139	크로아티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2.까지 한국 포함 비EU 및 비행권협약가입국 대상 입국 제한적 허용(10.16) - (관광경제활동유학 목적 입국자) △입국목적 증빙(숙소예약 확인서, 유학 증빙서류 등), △검체 채취 후 48시간이 지나지 않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 제출(미소지자 는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입국 후 7일간 자가격리 후 진단검사에서 음성 확진을 받을 경우 격리해제)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목적인도적 사유 등 입국자) 14일간 자기격리 원칙(입국 후 7일간 자기격리 후 진단검사에서 음성확진을 받을 경우 격리 해제) - 일반 방문의 경우 개인 거주지에 체류할 목적의 입국은 불가, 숙소 예약확인서 등 증빙 필요, 개별 입국 자격 및 증빙서류 관련하여 내무부 웹사이트 (http://mup.gov.hr/uzg-covid/286210)에서 확인, 온라인출입국심사(https://entercroatia.mup.hr)에 개인 입국정보를 사전 등록 ※ 제3국 국민(EU, 유럽경제지역 가입국 및 스위스 연방 제외한 모든 외국인) 중 △체류허가 소지자, △의료인, △경유자, △접경지역 근로자, △필수재화 화물기사, △군인, △경찰, △재난관리본부 직원, △외교관, △상용/인도적 목적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자의 경우 입국 가능 ※ 육로 경유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혹은 자기격리 의무는 없으나 12시간 내 출국 필수(최종 목적지 국가로 입국 가능 여부 사전 확인 필요)
140	키르기스스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5.부터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 소지 의무화 시행(미소지 또는 발열 등 증상 있을 경우 입국 불허) ※ △항공 입국의 경우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3일)내 발급 받은 음성확인서 소지, △육로 입국의 경우 출발 전 120시간(5일)내 발급 받은 음성확인서 소지
141	키리바시	▶ 3.20.부터 추후 공지 시까지 국경봉쇄(5.4.)
142	타지키스탄	▶ 타지키스탄 정부 발행 입국 허가서, 비자, 코로나19 음성확인서(입국 96시간 이전 발급) 소지자는 입국 가능(8.18.)
143	탄자니아	▶ 8.5.부터 모든 여행객(복귀 거주자 포함)은 소속 국가 또는 이용 항공사가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는 것을 여행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 탄자니아 도착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시 의무
144	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1.부터 제한적 입국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국 총리의 초청 및 허가를 받은 자, △태국인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 △태국 영주권자, △워킹퍼밋 또는 노동허가서 소지자, △여행객기 승무원, △태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교육기관의 학생, 학부모, △의료목적, △외교단, 국제기구, 정부대표단 및 배우자, 부모, 자녀, ※ (태국 입국 전 조치) △출국 14일 이전 위험지역 방문 및 모임 자제, △주재국 발행 입국허가증(COE), △비행적합 건강증명서(Fit-to-Fly Health Certificate), △입국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RT-PCR 방식), △10만불 이상의 치료비(코로나19 치료 포함) 보장 보험가입증명서, △정부지정격리장소 예약 서류, △출발시 호흡기 증상 및 발열검사(태국 입국 후 조치) △입국시 호흡기 증상 및 발열검사, △필수지참서류 제출, △모니터링 시스템/어플리케이션 설치, △정부 지정 호텔(ASQ)에서 최소 14일간 격리(자부담) 및 관련 규정 준수, △RT-PCR 방식의 코로나 검사
145	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입국자에 대해 5일 이내 검사받은 COVID-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온라인 입국신고서에 별도 첨부) ※ 입국 24시간 이전에 온라인 입국신고서(https://voyage.gouv.tg/checkphone) 작성(로메공항 입국시 실시할 의무 COVID-19 PCR 검사 신청, 비용 선지급 및 영수증 필수 지참) 완료 필요 ※ 입국 이후 공항에서 COVID-19 PCR 검사 의무 실시, TOGO SAFE 모바일 앱을 설치(30일간)하고 숙소로 이동하여 검사 결과(24시간 이내 email 또는 문자메시지로 송부)가 나올 때 까지 자기격리 실시 ※ 양성인 경우 별도의 시설에서 음성 판정시까지 격리 (발생된 모든 비용은 자부담) (10.8일 기준) ▶ 선박 선원에 대한 조치사항 (입국)입국전 5일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소지, △입국 72시간 이내 온라인(http://www.voyage.gouv.tg)에서 검사예약 및 비용결제, △토고정부 지정 선박 agent를 통하여 검사소로 이동, △코로나 검사 실시, 음성일 경우 입국허용(출국) 출국전 5일 이내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소지
146	통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20.) ※ 자국민, 영주권자 및 직계가족 제외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147	투르크메니스탄	▶ 모든 입국자 대상 14일간 별도 지정 장소(투르크멘바시 지역 격리소)에서 격리 및 재검진 조치
148	투발루	▶ 추후 공지 시까지 국경봉쇄 ※ 예외적인 조건(의약품, 인도주의 등)으로 입국 시 14일간 의무격리
149	튀니지	▶ PCR 검사결과 음성확인서 제출(8.19) - 모든 국가 출발자는 탑승 기준 72시간 내 발급(120시간 내 도착)받은 확인서 제출 ▶ 한국 출발시 도착 후 호텔 격리(9.28부터 적용) - 입국자 출발국의 코로나 위험도에 따라 3개 국가군으로 분류, 격리 등 조치 - 한국은 9.28부터 중위험국(황색)으로 재분류, 입국 후 7일간 호텔 격리 후 PCR 검사 실시, 음성일 경우 격리 해제 - 특히, 고위험국(적색)을 경유한 튀니지 입국은 불가한바 최소 중위험국(황색)을 경유하여 입국
150	트리니다드토바고	▶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23.) ※ 추후 공지시까지 공항 및 항구 폐쇄(5.9)
151	파나마	▶ 10.12부터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 해제 및 국제항공노선 운항 재개 ▶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음성 결과 확인서(PCR 또는 항체검사) 제출 시 자가격리 면제(10.12.) - 음성결과 확인서 미제출 시, 입국전 신속진단검사를 시행(\$50 USD 자가 부담), △음성 판정일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불요, △양성 판정일 경우 지정시설 내 14일간 자가격리 ※ 격리 중, 7일차 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재시행, 음성판정일 경우 격리 종료, 양성일 경우 남은 격리기간 완료 필요
152	파라과이	▶ 10.21.부터 공항을 통한 입국 제한적 허용(육로 입국의 경우 10.15.부터 브라질 국경 도시 3개에 한하여 상업·관광 목적 일시 입국 허용) ※ 14일간 자가/격리 시설/지정 호텔에서 격리 - 입국 시점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 자가격리 7일(격리 7일 째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하고 음성 판정 시 격리해제, 검사비용 자부담) - 입국 시점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하고 7일 미만 체류 시 자가격리 불요 ※ 여행자 보험(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치료비용 포함) 의무화 ※ 파라과이-브라질 육로국경으로 입국 시 입국 지점으로부터 30km까지 이동 허용, 24시간 이상 체류 금지
153	파키스탄	▶ 파키스탄발 국제 항공편 일부 운항 재개(5.30.) ※ 입국 시 무증상자는 14일간 자가격리 실시(보건 당국이 모니터링), 유증상자는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부 운영 격리 센터(무료) 또는 지정 호텔(자부담)에서 격리 ▶ 10.5부터 한국 포함 카테고리A에 속한 국가발 입국자의 경우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 면제 - 10.5부터 모든 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의무 해제(10.2) ※ 단 입국 시 코로나 관련 증상이 발생되어 검사를 통해 확진판정을 받거나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 시 자가 격리 요구 가능 ※ 모든 입국자들은 파키스탄 도착 전 Pass Track 앱을 설치하고 개인정보 입력
154	파푸아뉴기니	▶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22.) ※ 예외적으로 통제관의 사전 승인자만 입국가능(6.17.) ※ 파푸아뉴기니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는 모든 승객은 7일 이내 코로나19 진단테스트 음성결과 필요(7.20) - 동 진단검사는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법(Real-Tim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만 인정 ※ 모든 입국자 대상 지정호텔에서 14일간 격리(비용 자부담) - 단, 호주(빅토리아주 제외), 뉴질랜드, 솔로몬제도, 바누아투, 피지, 키리바시, 마셜제도, 통가, 투발루, 나우루, 마이크로네시아, 쿡제도, 사모아, 팔라우, 니우에에서 7일간 격리한 경우 파푸아뉴기니 격리기간을 7일로 단축(10.3.)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155	팔레스타인	▶ 한국,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이라크,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156	페루	▶ 11.1부터 미주 대륙 17개국에서 정기 항공편으로 입국 가능 ※ 단, △거주증 소지자,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 소지자 대상(사전에 주한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 및 수령 필요) - △여행 출발 72시간 이내에 실시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 지참, △여행자 건강상태확인서 및 자가격리 관련 서약서 작성(페루 이민청 온라인 제출), △페루 출입국 시 여행 출발 48시간 이내에 페루 이민청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출입국 사전등록' 실시 - 유증상자는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
157	피지	▶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및 국경 봉쇄(5.4.)
158	필리핀	▶ 3.22.부터 특정 비자 소지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9.) ※ 외교비자(9E) 소지자, 이민비자(영주권 등) 소지자, 필리핀인의 배우자 및 자녀, 승무원은 입국 허용 ※ (11.1부터)△옴니버스 투자 규정(행정명령 226, RA No.8756으로 개정)에 따른 비이민비자 소지자, △필리핀 법무부가 발급한 47(a)(2) 비자 소지자, △오로라 경제자유구역청 및 수빅자유구역관리청이 발급한 비자 소지자 대상 입국 허용 ※ 필리핀 입국 시 공항에서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검사 비용 자부담),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정 시설 또는 지정 호텔 격리(5.6.) - 지정 호텔에 격리할 경우 입국 전 예약 필요 ※ 입국 시 실시한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시설/호텔 격리는 해제되나, 거주지 또는 지역 관찰 시설에서 14일간 격리(단, 기간 및 장소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5.6.)
159	헝가리	▶ 11.1.까지 외국인 입국 금지 ※ 단, 영주권, 거주증 등 헝가리 내 90일 이상 장기체류허가증 소지자의 경우 입국 가능(입국 시 14일 자가격리) ※ 헝가리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적 방식의 입국 신청 가능(입국 심사 시 코로나19 증상 유무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 입국 시 14일 자가격리) ※ 외교, 공무 목적 입국 가능 ※ 쉥겐협약을 따르고, 코로나19 증상이 없으며, 최종 도착국 이동편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경유 가능(단, 헝가리 내 24시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음)
160	호주	▶ 3.20.부터 모든 외국 국적자 입국금지(3.19.) ※ 영주권자, 시민권자 및 이들의 직계가족은 입국 가능하나, 3.29.부터 지정시설에서 14일간 격리 ※ 동일 공항 내 대기시간 8시간 이내의 경우 무비자 경유 가능(5.14.) - 대기시간 8-72시간 이내의 경우 공항 인근 정부 지정 격리시설에서 연결 항공편 이륙시간까지 대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경유비자 필요(국경수비대 입국허가 불요) - 단, NSW주에서 8-72시간 대기하는 경우 주정부의 격리 면제 허가 필요 - 주(州)간 이동 등이 필요한 경우 주정부, 연방정부, 보건당국, 국경수비대의 승인 필요 ※ 10.16.부터 뉴사우스웨일즈, 북부준주에서는 뉴질랜드에서 입국하는 자 대상 국경 개방 예정(우리 국민도 대상에 포함) - 비자 및 입국 전 최소 14일간 뉴질랜드 체류 사실 입증 필요
161	홍콩	▶ 모든 홍콩 비거주자의 홍콩 입국 금지(4.6.) ※ 6.1.부터 홍콩 국제공항을 통한 경유 가능 - 출입국 절차 없는 24시간 내 환승에 한함, 홍콩을 경유한 중국 출입국 및 자가 환승은 불가 - 도착 시 발열 검사 후 환승편 게이트로 바로 이동, 승객 간 1.5m 거리 유지 ※ 중국, 마카오, 대만에서 입국하는 경우 지난 14일 내 해외방문 사실이 없을 시 홍콩 비거주자라도 입국 가능, 입국 후 14일간 자가/호텔 격리(4.6.) ※ 입국 후 △코로나 19 검사 실시,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격리 중 전자손목밴드 착용, △고위험국가*에서 출발하는 경우 탑승 전 48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소지 필수 *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남아공, 카자흐스탄,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에티오피아, 영국, 미국 ※ 외교관, 정부대표단은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및 격리면제(7.29.)

- ※ EU 회원국(27개) :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크로아티아 (밀줄 국가는 非생권협약 가입국)
- ※ 생권협약 가입국(26개)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밀줄 국가는 非EU 회원국)

■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관련 조치 해제 : 26개 국가지역

- ※ 방문하시려는 국가지역 관할 우리 공관(대사관·총영사관·출장소·분관 등) 홈페이지, 해당 정부 공식 홈페이지 등을 사전에 필수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조치 해제 국가지역(해제 시기)
유럽	▶ 그리스(7.1.) ^① , 네덜란드(7.1.) ^② , 라트비아(7.1.) ^③ , 루마니아(8.5), 룩셈부르크(7.1.) ^④ , 리히텐슈타인(7.20.), 몬테네그로(5.30.) ^⑤ , 몰타(7.11.), 벨기에(9.23.) ^⑥ , 북마케도니아(6.26.), 불가리아(7.16.), 사이프러스(4.20.) ^⑦ , 세르비아(5.22.) ^⑧ , 스위스(7.20.) ^⑨ , 슬로바키아(7.6.) ^⑩ , 슬로베니아(9.29.), 알바니아(7.1.) ^⑪ , 에스토니아(7.6.), 오스트리아(9.28.) ^⑫ , 우즈베키스탄(9.21.) ^⑬ , 체코(7.13.) ^⑭ , 터키(6.11.), 포르투갈(7.1.), 폴란드(7.3.) ^⑮ , 프랑스(7.3.) ^⑯ , 핀란드(7.27.)

- ① 그리스 : 그리스 정부 홈페이지(<http://travel.gov.gr/#/>)에서 입국 24시간 전 △출발 국가, △최근 14일간 방문한 국가, △그리스 내 체류지 등에 대해 온라인 승객위치질문서(Passenger Locator Form) 제출(이메일로 QR 코드 수신, 검역 요원이 QR 코드 확인), 알바니아·불가리아·루마니아·북마케도니아·헝가리·몰타·벨기에·스페인·이스라엘·UAE에서 입국하는 경우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 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
- ② 네덜란드 : 입국 시 검역설문지(Health Certificate) 지참 필요
- ③ 라트비아 : 모든 입국자는 도착 48시간 전 covidpass.lv 접속, 질문서 작성(QR코드 부여)
- ④ 룩셈부르크 : 단, 거주증명 필요
- ⑤ 몬테네그로 : 몬테네그로 정부 보건 기준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분류(상세 목록은 주세르비아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 Green(입국허용), Yellow(72시간 이내의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필요), Red(외국인 입국 불허)
- ⑥ 벨기에 : 자가격리나 진단검사 없이 벨기에로의 무비자 비필수목적 여행(관광 등)이 가능
- ⑦ 사이프러스 : 사이프러스 정부 홈페이지(www.cyprusflightpass.gov.cy)에서 항공기 출발 24시간 전 승객위치질문서 등 제출 필수(승객위치질문서 제출 시 입국여부 확인 가능)
- 사이프러스 북부는 터키 점령지역으로, 사이프러스 정부는 제3국민의 니코시아(수도) 경유 북부 지역 이동 불허
- ⑧ 세르비아 : 주변 4개국(크로아티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북마케도니아)에서 입국하는 경우 48시간 이내 발급된 PCR검사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
- ⑨ 스위스 : 스위스 연방 보건청 공지 고위험국가/지역을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은 자가 또는 격리가 가능한 장소(호텔 및 기타 숙박시설)에서 10일간 격리(비위험국에서 출발하여 고위험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 24시간 이내로 경유 공항을 이탈하지 않고 환승 시 격리 면제)
- ⑩ 슬로바키아 : 최근 14일 이내 고위험국 방문 후 입국하는 경우 사전 신고 의무 및 자가격리 의무(입국 후 5일 이후 진단검사 실시, 음성판정시 격리 해제)(10.1부터 고위험국 명단 수시 변경)
- 고위험국 : 아래 저위험국(지역)을 제외한 모든 국가
- 저위험국 : 한국, 호주,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중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일본, 캐나다,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헝가리, 모나코, 독일, 노르웨이, 뉴질랜드, 폴란드,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이탈리아, 영국, 산마리노, 대만, 교황청
* 단, EU회원국인 고위험국만 방문한 경우에는 72시간 이내 발급된 음성확인서 소지 시 신고의무 및 자가 격리 의무가 면제되는 등 예외 적용
- ⑪ 알바니아 : 단, 그리스는 알바니아에 대한 해상, 육로 이동을 전면 제한(항공의 경우 아테네 국제공항에서만 이착륙 허용), 출국 전 항공사별로 별도 요구사항 확인 필요
- ⑫ 오스트리아 : 2021.3.31.까지 EU차원의 역외국경 통제에 상응하는 조치 시행(10.17)
※ (안전국가에서 입국시) 오스트리아 정부 입국제한조치 면제
- 단, 입국전 10일 이내 오스트리아 정부가 고시한 안전국가에 체류했을 경우만 해당
※ (안전국가 외 국가에서 입국시) 입국 금지(단, 오스트리아 및 EU/EEA/스위스 국적자 및 동 국가 거주허가를 소지한 외국인은 입국 가능하나, 아래 입국제한 조치 부과)
- 안전국가 외 국가에서 입국시: 입국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시 의무
- 위험국가에서 입국시: 자가격리 실시 후 48시간이내 코로나19 검사 의무
※ 한국은 9.28.부터 안전국가로 분류(안전국가 및 위험국가 관련 내용은 주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 (주의) 단순 경유 목적으로 오스트리아 입국시, 최종 도착국(EU역내 오스트리아 주변국) 정부 발행 입국허가서 등 증빙서류 필수 지참

- EU역내국가간 입국규정이 상이하여, 일부 국가의 경우 무사증 입국으로 간주하여 입국 거부 및 출국시 벌금부과 사례 발생

- 경유 목적 및 인적사항 등을 기입하는 '경유 확인서' 작성 및 제출 의무

⑬ 우즈베키스탄 : 한국 포함 녹색 국가(항공기 탑승 전 14일 이상 해당 국가 체류 조건)에서 출발 시 별도 조치 없음(방역등급 재조정 시 입국관련 조치 변동 가능하므로 주의 필요)

⑭ 체코 : 9.21.부터 체코 입국 전 14일 이내 12시간 이상 체코 정부가 분류한 위험국에 체류한 자는 9.21.부터 입국시 △사전신고(www.prijездovyformular.cz), △자부담으로 입국 후 PCR 검사 필요

- 위험국 : 아래 저위험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

- 저위험국 : 안도라, 호주,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크로아티아,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이태리, 일본, 캐나다, 대한민국, 사이프러스,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헝가리, 몰타, 모나코,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그리스, 산마리노,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태국, 튀니지, 바티칸, 영국

※ 10.21.부터 필수적 목적에 한해 입국 허용(입국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지참 권고)

⑮ 폴란드 : 벨라루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방문 후 입국하는 경우 10일간 격리 조치 및 주재국 정부가 고시한 항공운항금지국가에서 입국 또는 경유하거나 제3국에서 비필수적 목적(관광 등)으로 입국하는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

⑯ 프랑스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뉴칼레도니아·왈리스 푸투나·마요트의 경우 항공기 탑승수속 전, △탑승 기준 3일 이내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가족·직업·의료상 불가피한 방문임을 적시한 증명서 작성 및 제출, △무증상 서약서 작성 및 제출 필요